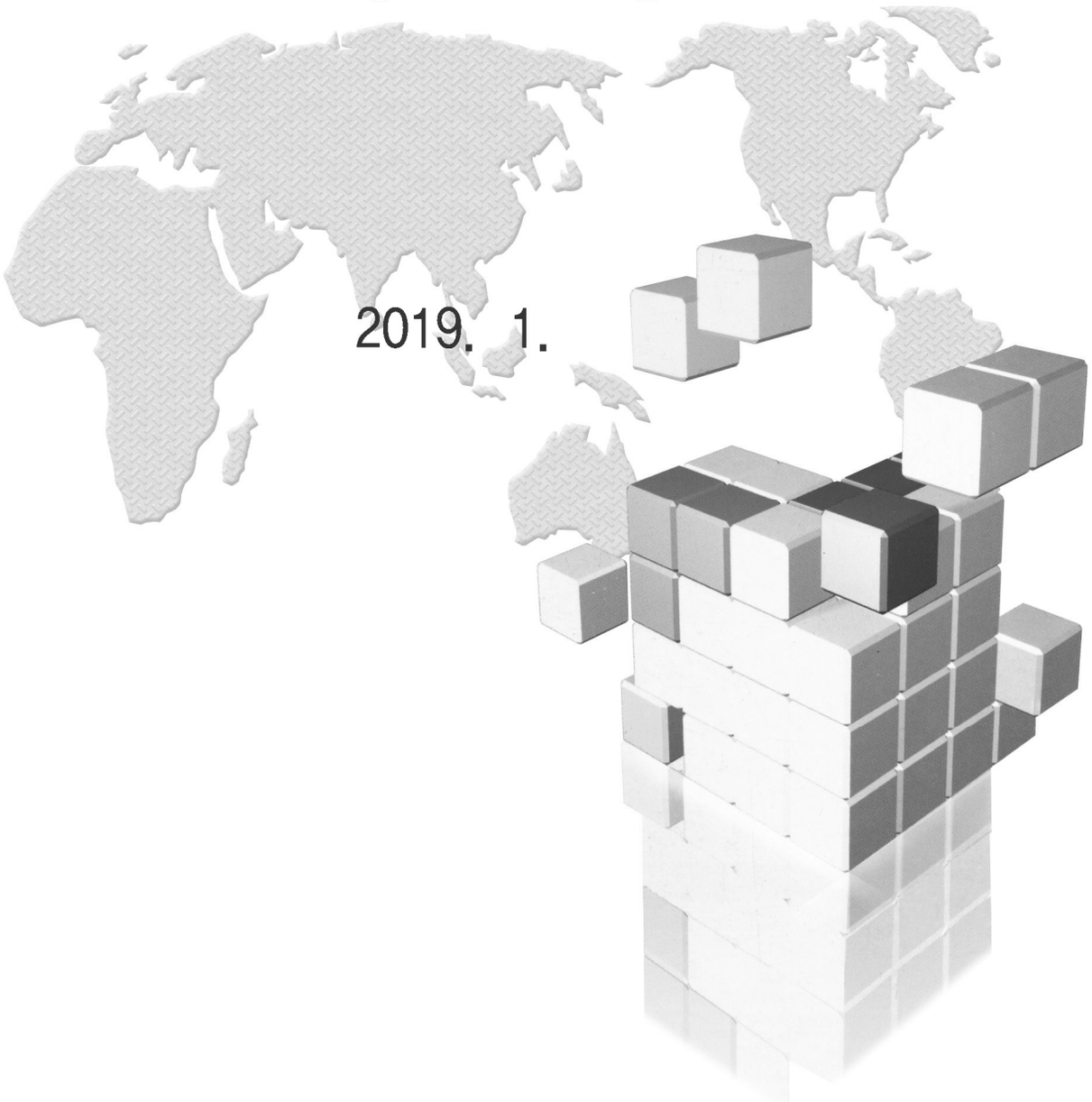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0000-000233-08

www.mois.go.kr

2018년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2019. 1.

행정안전부

Contents

목 차

1.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사례 ·····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부이사관 황규철

2. 중국의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 ····· 13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 부이사관 박병은

3. 일본 수해·토사재해 시 피난(대피)에 관한 제도개선 ····· 39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 부이사관 황명석

4. 우즈베키스탄 행정개혁 추진현황 ····· 85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서기관 우희창

5. 싱가포르 디지털정부 추진전략 ····· 8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서기관 전한성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부이사관 **황 규 철**

1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사례

1. 머리말

2. 연방제 국가

3. 직접민주주의 나라

4.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사례

5. 시사점

※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하는 '행정포커스 2019년 1 · 2월호'에도 같은 내용을 기고함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사례

〈요 약〉

■ 스위스 연방제 및 직접민주주의

❍ (연방) 주로 외교 및 안보정책, 관세와 화폐, 스위스 전역에 효력을 지닌 법의 집행, 국방 등의 사안을 다룸

❍ (지방) 명확하게 연방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칸톤, 州)의 사안으로 간주

❍ (국민투표) 스위스 국민은 1년에 4번 국민투표를 함
- 연방, 칸톤(광역), 코뮨(기초)의 안건을 함께 투표

■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사례

〈 추크(Zug)시의 크립토밸리 조성 사례 〉

❍ 2013년부터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600여개의 관련 기업이 추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 공공서비스 요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고 있음(2017.7)

〈 제네바 칸톤의 의무교육기간 연장 사례 〉

❍ 2018년 9월부터 의무교육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연장

❍ 실업률을 낮추고, 관련 복지비용도 절감시키는게 목적

■ 지방분권(연방제)의 시사점

❍ 불확실성이 크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

1 머리말



스위스 알프스(멘리헨)

* 사진출처 : 스위스 관광청 홈페이지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높은 산과 초록 들판이 어우러져 있는 알프스 지역의 풍경일 것이다. 그래서 스위스 여행자라면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르덴 등에서 알프스의 풍광을 보는 일정을 꼭 넣기 마련이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지내다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게 '대통령', '총리' 등 유력 정치지도자와 관련한 뉴스, 가십 등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스위스가 연방제 국가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스위스 대통령, 알랭 베르세(45) 내무장관 – 1년마다 바뀌고 실권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기에 현지인도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resident_of_the_Swiss_Confederation)

2 연방제 국가

스위스는 26개의 칸톤(州)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연방은 주로 외교 및 안보정책, 관세와 화폐, 스위스 전역에 효력을 지닌 법의 집행, 국방 등의 사안을 다루고, 이 외에 명확하게 연방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칸톤의 사안으로 간주된다.

연방수준에서는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하원은 스위스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정당은 각 칸톤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의원을 연방하원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규모에 의해 10명을 하원의원으로 보낼 수 있는 루체른(Luzern) 칸톤에서는 A당이 50%를 득표했다면 A당은 선거를 위해 작성한 정당명부의 상위 5명까지 연방하원에 보낼 수 있다.

연방상원은 개별 칸톤을 대표하며, 20개 칸톤에 각 2석, 6개 반(半)칸톤에 각 1석이 할당되어, 총 4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상원 선거는 개별 칸톤에서 실시되는데 다수대표제에 의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연방 상·하원 의원 246명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으로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연방대통령은 이 7명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즉 의원중에서 선출된 장관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구조다.



2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위스

*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wiss_cantons.png

26개의 각 칸톤은 관할 영토 내에서 완벽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고유한 정치체계 및 입법권, 행정권을 유지한다. 즉, 개별 칸톤은 교육제도, 문화정책 등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상당한 자치권한이 있다. 칸톤 하위에는 가장 작은 정치적 단위에 해당하는 커뮨(commune)이 있다. 커뮨의 자치권은 그 커뮨이 속한 칸톤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칸톤 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 20% 정도의 커뮨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주민의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80% 정도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직접 참석하는 커뮨집회(commune assemble)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3 직접민주주의의 나라

스위스 국민은 1년에 4번, 즉 3개월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한다. 칸톤 행정부와 코뮨(기초 자치단체에 해당) 행정당국은 칸톤과 코뮨의 사안을 모아, 연방의 국민투표와 함께 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의무적 레퍼렌덤(mandatory referendum), 선택적 레퍼렌덤(optional referendum),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s)이 그것이다.

의무적 레퍼렌덤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의 전면적 수정이나 국제기구 가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며, 투표자의 다수는 물론 칸톤의 다수가 찬성해야만 안건이 통과된다.

선택적 레퍼렌덤은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내지는 집행하려는 정책 등에 반대하는 국민 5만명의 서명으로 실시하는 투표다. 이때는 투표자의 다수만으로 안건이 통과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발안은, 연방헌법 또는 칸톤헌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안을 국민이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의 경우, 발안의 주체가 연방사무국에 안건을 제출한 이후 18개월간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고 연방사무국의 허가로 투표가 실시된다.



"기본소득" 안에 대해 반대하는 포스터, 2016년 6월 국민투표 안건이었고 76.9%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사진출처 : https://lenews.ch/2016/05/09/should-swiss-families-get-chf-75000-a-year-to-do-nothing/

4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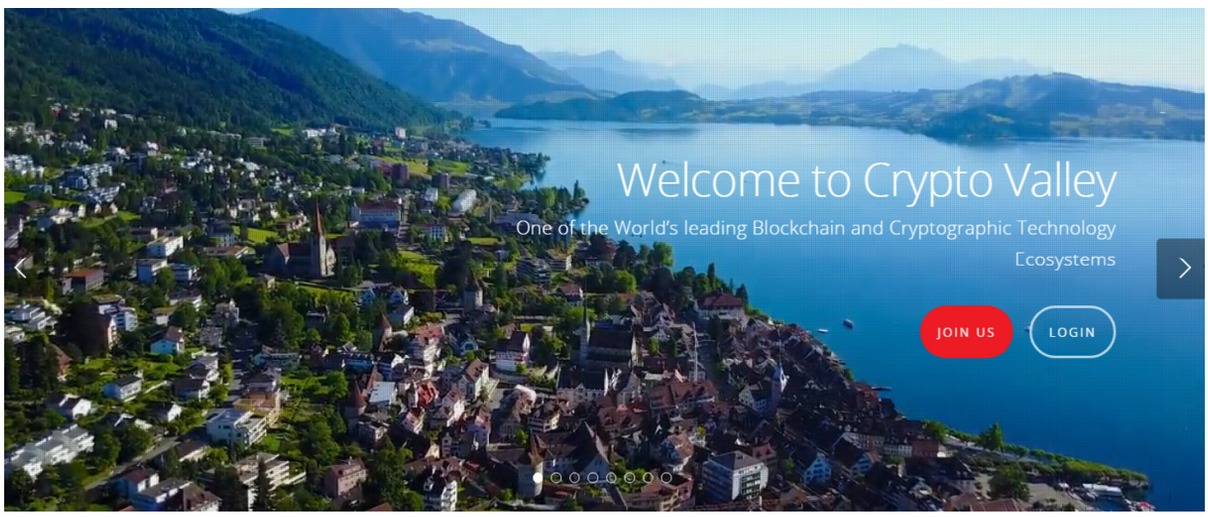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정부 또는 지역주민에게 있다보니 국가단위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정책을 지방정부가 과감하게 채택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추크(Zug)시의 크립토밸리 조성 정책과 제네바(Geneva)주의 의무교육기간 연장 사례를 소개해본다.

① 추크(Zug)시의 크립토밸리 조성 사례

2017년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화폐냐 아니냐 그래서 화폐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의견이 나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의 경우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투기 자본이 대거 몰려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력히 금지하는 나라가 많다.



클립토밸리 홈페이지 화면

* 화면출처 : https://cryptovalley.swiss/

하지만 스위스의 추크시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이 합법[1]일 뿐만 아니라, 2017년 7월부터 추크시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고 있다. 비트코인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ATM이 시청 주변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크립토밸리(Crypto Valley) 조성사업이다.

크립토(Crypto)는 '암호의'라는 뜻으로, IT산업의 중심이 실리콘밸리(Silcon Valley)인 것처럼, 추크 지역을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만들고자하는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클립토밸리"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600여개의 관련 기업이 추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스위스'라는 회사가 추크시에서 설립된 후 특별한 규제없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관련 회사들이 하나둘씩 추크시에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추크시에 모이게 된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크립토밸리 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가 설립되었고, 여기에 추크시도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이다. 즉, 크립토밸리 사업은 추크시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의 중요한 업무가 된 지 오래다.

1) 스위스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ICO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2017년 9월, 2018년 2월 개정안). 물론 이전에도 ICO가 불법이었던 것은 아니었음

암호화폐 활용법과 그 근본 기술인 블록체인 개발, 이 모두를 지원할 핀테크 생태계 조성 같은 문제는 여전히 대중에게 어렵고 전문가에게 조차 불투명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위험성만큼이나 큰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추크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과감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크립토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Top 50

* 그림출처 : http://fintechnews.ch/blockchain_bitcoin/top-50-crypto-valley-companies-in-switzerland/22763/

② 제네바 칸톤의 의무교육기간 연장

스위스 연방정부에는 교육부가 없다. 교육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2]. 그래서 지역별로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초등과정(ecole primaire), 중등과정I(secondaire I), 중등과정II(secondaire II), 고등과정(tertiary)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과정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순서대로 대응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스위스 연방헌법에 따르면 초등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외의 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지방정부(칸톤) 소관이다.

초등과정은 만6세 부터이며 이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중등과정I(한국의 중학교에 해당)까지로, 의무교육 기간은 총 9년이다. 그 이후 과정인 중등과정II부터는 지역마다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세부 교육과정도 다양하다. 제네바 지역을 기준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학생의 적성과 진로 선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크게 3가지 종류다. 먼저 대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하는 'College'[3], 직업교육 위주의 'Apprenticeship/Business schools', 마지막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Ecole de Culture General'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이 중등과정II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제네바 지역도 최근까지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제네바 칸톤의 의무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의무교육이 만18세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이 정책은 2012년 제네바칸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고 세부적인 준비[4]를 거쳐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제네바 지역의 실업률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8년 7월 통계에 의하면, 제네바 칸톤의 실업률은 4.3%로 스위스 평균(2.4%)의 두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직업교육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제네바지역에서 자격을 획득 못하고 직업학교를 그만두는 젊은이의 비율이 대략 10~15%인데, 이는 스위스 전체평균인 5.6%를 훨씬 상회한다. 제네바 칸톤은 추가된 3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젊은이의 자격증 획득 비율을 95%로 높여, 중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관련 복지비용도 절감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네바 칸톤의 이러한 정책이 과감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실업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으로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는데 있다. 즉 정책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정책을, 교육 · 노동통계간 상관관계가 있다[5]는 것을 근거로 추진한다는 게 어찌보면 위험부담이 커 보인다.

3) 독어로는 김나지움(gymnasium) 불어로는 리쎄(lycee)라고 불린다

4) 관련 행정조치 : ㅇ 대안없이 학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강화 ㅇ 직업교육을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중등과정I과 중등과정II간 연계성 강화 ㅇ 의무교육 불이행시 그 부모에게 벌금부과 방안 ㅇ 4년간 약 200억원 예산편성 조치 등

5)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관계는 있지만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니므로, 교육을 더 한다고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5 스위스 지방분권이 주는 시사점

추크시의 암호화폐 정책이 정말 블루오션을 개척한 정책이 될 지, 그리고 제네바 칸톤의 의무교육 연장 정책이 원하는대로 실업률을 낮출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정책을 소개한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다.

과거 압축경제성장 시대에는 가야할 방향이 명확했다. 그렇기에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지금의 저성장 시대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크게 추진할 만한 정책 또는 사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고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위스 지방정부의 두 개 정책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국가적 차원의 성공으로 연결시키고, 실패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국한된 실패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실증 데이터는 향후 귀중한 정책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골드러시때 리바이스가 창업되고 샌프란시스코가 생겼듯이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부산물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들면, 추크시가 암호화폐 정책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세계적인 핀테크 업체를 가지게 될 수 있고, 제네바 칸톤의 교육정책이 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교육 및 노동정책의 가성비(투입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불확실성이 크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정책일수록 한 두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방식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스위스의 연방제와 직접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풍부한 사례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박 병 은**

2 중국의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

- 국무원 지도의견(2018.7.31 공포) -

Ⅰ. 국무원 지도의견 발표 배경

Ⅱ. 지도 의견

【첨부자료】

중국의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

국무원 지도의견(2018.7.31 공포)

〈요 약〉

○ 중국 국무원은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 추진에 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을 2018.7.31.일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 하달

○ 전국적 통일, 협동 및 공유, 프로세스 개선, 시범지역 우선실시, 네트워크 보안 등 5대 업무원칙을 제시하고, 2022년까지 모든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망에서 모두 처리하는 "一网通办"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 제시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을 허브로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모두 연계하여 정부관리방식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모두 달성하고자 함

○ 행정서비스를 정부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추진 방식을 오프라인(线下跑)에서 온라인(网上办)으로, 개별 처리(分头办) 방식을 협동 처리(协同办)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음

○ 국무원 판공청 주도로 각급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과 함께 관련 제도(법령) 마련, 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및 표준화, 정보 공유 및 공개, 모바일 서비스 실현,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되, 각급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진실적을 성과평과체계와 연계하는 등 목표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있음

Ⅰ 국무원 지도의견 발표 배경

○ 국무원은 2018.7.31일 리커창 총리의 재가를 받아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 추진에 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을 각 성급정부(자치구·직할시 포함), 국무원 각 부처·위원회, 각 직속기구에 시달함

○ 중국이라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국무원의 지도의견은 법령이상의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기속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 향후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는 현재 국무원판공청 주도로 전자정부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3년이후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Ⅱ 지도의견

* 국무원 발표 지도의견을 번역 발췌요약

○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정부 기능의 개편, 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행정관리방식 혁신,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일환으로 인터넷+행정서비스”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 창구 단일화, 원스탑 서비스, 비대면 심사 등 개혁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짐

○ 그러나, 행정서비스 플랫폼 간의 연계 부족, 업무표준 불일치, 데이터 공유 미비, 업무협조 부족이라는 많은 문제점도 발견됨

○ 기업과 국민에게 일체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가속화 추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의견을 제시

1. 전반적인 요구사항

(1) 지도사상

○ 행정간소화와 권한 위임(放), 관리·감독 능력 강화(管), 서비스수준 향상(服)하는 개혁(放管服改革)을 위해 '인터넷+행정서비스'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자원의 융합, 프로세스 개선, 협동 강화, 기업과 국민의 관심분야와 어려운 점을 해결

○ 행정서비스를 정부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추진 방식을 오프라인(线下跑)에서 온라인(网上办)으로, 개별 처리(分头办) 방식을 협동 처리(协同办) 방식으로 전환

⇨ '하나의 망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一网通办)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구축

(2) 업무 원칙

① 전국적 통일

- 탑다운방식의 설계, 통일적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연계하고 원활한 업무협업체계를 구축
- 표준규범을 제정하고, 행정서비스, 업무처리 프로세스, 데이터 공유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 추진

② 협동 및 공유

- 전자정부서비스가 원칙이고 오프라인서비스가 예외이며, 망 연계가 원칙이고 독립망은 예외
- 데이터 공유를 핵심으로 각 지방정부, 부처의 업무협업능력 제고
- 행정서비스 사무를 공개하고 행정서비스 데이터를 개방·공유하여 '망통합·데이터통합·업무통합'을 추진

③ 프로세스 개선

- 기업과 국민의 '애로점'(难点), '막힘점'(堵点), '아픈점'(痛点)을 발굴
- 행정기관 여러 차례 방문, 창구에서의 긴 대기 시간, 여러 사이트 검색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서비스방식을 혁신
-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과 만족도를 제고

④ 시범지역 선정 후 우선 실시

– 기반이 성숙된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를 시범기관·지역으로 지정하여 먼저 실시해보고, 시범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등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한 후 전국적 실시

⑤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보안 확보

– 네트워크 보안의 최저선을 설정하고 보안체계를 완비하며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함

– 네트워크 보안계획 수립, 보안통보체계 완비, 종합 보안체계 강화, 신뢰할만한 보안장비를 적극 활용으로 행정서비스네트워크와 데이터 정보의 안전성 확보

(3) 업무 목표

① 2018년 말까지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주요기능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시범실시를 통하여 일부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이 연결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행정사무 코드 제정, 신분인증 통일, 전자인감 통일, 전자 증명서 통일 등 표준규범을 제정하는 등 전국 일체화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토대 마련

② 2019년 말까지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점검 운영, 각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이 연결하여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표준규범 체계, 보안체계와 운영 관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

– 중앙부처의 수직 업무처리 시스템이 지방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높아져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프레임을 초보적으로 완성

③ 2020년 말까지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기능이 진일보 강화하여 각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이 전부 연결되고 행정서비스 사무가 모두 플랫폼에 게시

– 중앙부처의 데이터 공유가 실현되어 지방의 보편적인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고 하나의 망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一网通办” 능력이 현저히 향상

④ 2022년 말까지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전체 허브로 하는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이 더욱 최적화되고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 사항의 표준 통일, 전체 연동, 업무협동을 모두 이루어짐

– 법령에서 국가 기밀로 지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전부 플랫폼에 포함시켜 처리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하나의 망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一网通办”을 실현

2. 전체 프레임과 각각의 요구사항

(1) 개요

○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은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업무처리시스템)과 지역별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전체 허브이며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구체적인 사무처리 서비스 플랫폼 역할 수행

○ 각 급 정부는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하여 각 종 온라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통일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중앙부처와 각 성(자치구, 직할시)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통일 표준 규범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전면적으로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과 연결하고,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하여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서비스 혁신을 전개

(2)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은 행정서비스 포털 통일, 행정서비스 관리 통일, 신분인증 통일, 전자인감 통일, 전자 증명서 통일 등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 모니터링, 서비스 평가, 상담 민원, 사용자 체험 모니터링 등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며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관리의 표준 규범 체계, 보안체계와 운영관리체계를 구축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전체 허브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데이터를 모아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 각 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지원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을 총체적인 포털로 함

(3)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업무 처리 시스템)

○ 중앙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해당 부처의 업무 처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에 의한 공공 지원 시스템에 의거하여 행정서비스 자원을 통합 이용하며 해당 부처의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상호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조하며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하여 지역, 부처를 넘나드는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

* 전국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 관리 플랫폼,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 관련 신용정보 시스템 등 전문 분야의 국가 중점 정보 시스템은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잘 연계되어야 함

(4) 각 지역(지방정부) 행정서비스 플랫폼

○ 각 지역의 플랫폼은 성급 총괄 원칙에 따라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각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하여 상호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성, 시, 현, 향진(가도), 촌(사구)에 모두 제공

○ 각 성(자치구, 직할시)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이 상호 연결되고 상호 통하며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하여 지역, 부서, 단계를 넘나드는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

3. 행정서비스 일체화, 전국표준 통일, 전과정 온라인 처리 추진

(1) 행정서비스 사무를 규범화

○ 행정서비스는 행정권력사무와 공공서비스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전국 표준의 행정권력사무 목록을 작성하고 사무 명칭, 코드, 근거, 유형 등 기본 요소를 국가·성·시·현 4단계에서 통일 추진

–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보장, 민정, 빈민 구제, 공공법률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사무를 전면 정리하고 서비스 리스트 및 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점진적으로 규범화

○ 행정서비스 수리 요건, 신청서류, 중개 서비스, 업무 처리 과정 등 정보요인을 최적화하여 사무 요건과 업무처리 지침의 표준화와 규범화를 실현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事项库)를 건설하여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결시키고 게시하는 것을 추진

○ 전국 연동의 행정서비스 사무의 동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역별, 단계별, 각 루트에서 발표하는 행정서비스 데이터가 동일한 근원에서 동시에 업데이트되어 동일한 사무의 차별없는 수리, 처리 과정과 평가 기준의 통일을 실현

(2) 행정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

○ 하나의 망에서 모든 업무처리원칙(一网通办)에 근거하여 행정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신분인증, 전자인감, 전자 증명서 등 기본지원서비스에 의하여 증명서, 업무처리서류, 데이터 자원 공유, 서류의 간소화, 처리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공개, 요금수납, 상담 등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 기업 개설, 투자항목 심사, 건설사업 승인, 부동산 등록 등 여러 부처, 지역과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통합하여 점차적으로 명세서 한 장으로 알리고,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하고, 하나의 표준으로 접수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피드백 등을 실현

○ 여러 가지 증명을 하나로 합치고, 합동 심사를 진행하고,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관계기관 합동 심사·처리

○ 프로세스의 최적화, 시스템 통합, 데이터 공유, 업무 협력을 통해 심사의 간소화, 관리 감독의 강화, 서비스 최적화를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하나의 창구 접수, 한 번에 처리'를 실현하며 기업 설립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사업심사 시간도 반으로 줄이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증명은 일률적으로 폐지 등 개혁 추진

(3)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의 융합

○ 온라인 오프라인 사무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반적인 연동, 전 프로세스 온라인화를 추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한 세트 서비스 표준과 하나의 처리 플랫폼을 형성

○ 행정서비스 사무 리스트, 업무처리 지침, 처리상태 등 관련 정보를 행정서비스 플랫폼, 이동 단말기, 업무청사, 정부 사이트와 제3자 인터넷 입구 등 서비스채널에서 동시에 발표

○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국민의 편리를 위한 서비스 센터를 향진(가도), 촌(사구)로 확대

(4) 이동(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확대

○ 공안, 인력자원사회보장, 교육, 위생건강, 민정, 주택도시농촌건설 등 분야를 중점으로 활용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동 단말기로 확대하여 더 많은 행정서비스 사항의 '손안의 처리'(掌上办)와 '손끝 처리'(指尖办)를 실현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이동단말기 구축을 가속화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앙부처가 이동 단말기 서비스 자원에 접속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동단말기 서비스사업 추진

○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이동 단말기 구축 지침을 제정하고 설계 구현, 응용 접속, 보안, 운영 등을 명확히 하며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규범적인 관리를 지도

○ 각 급 기관의 행정서비스 플랫폼 이동단말기의 일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등록 인증, 보안 검사, 보안 강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이용 보급 등 관리를 강화

○ '양미일단'(两微一端) 등 행정 뉴미디어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제3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

4. 공공네트워크 일체화, 데이터 공유와 업무협력 촉진

(1) 네트워크 일체화

○ 각 급 기관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국가전자정부 외부 네트워크 구축에 의거하고 인터넷에 배치된 행정서비스 포털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 국가 전자정부 외부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안전 보장을 강화하며 업무량이 많고 시의성이 높은 행정서비스 응용 수요를 만족

○ 각 지역 및 중앙부처의 기밀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 전문 네트워크와 전자정부 외부 네트워크를 연계 통합

(2) 신분인증의 통일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은 자연인의 신분 정보, 법인 정보 등 국가인증자원을 기반으로 전국 통일 신분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의 기구와 온라인 인증협력을 추진하여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 및 이동 단말기를 위해 통일적인 신분 인증 서비스를 제공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인증능력을 이용하여 표준에 따라 최적화된 증빙서류와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지역과 부처의 플랫폼에서 중복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여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一次认证、全网通办)을 실현

○ 각 지역 각 부처는 이미 구축된 신분인증시스템을 관련 규범에 따라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통일 신분인증 시스템과 연결

(3) 통일적인 전자인감

○ 행정서비스 분야의 전자인감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전자인감의 전 과정을 규범화하며 전자인감이 찍힌 전자 서류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상용비밀번호에 기반으로 한 숫자서명 등 기술을 응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통일의 전자인감시스템에 의거하여,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전자인감을 발급

○ 전자인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은 국가 전자인감 기술에 따라 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미 전자인감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은 관련 규범에 따라 연계

(4) 전자 증명서를 통일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전자 증명서 공유서비스시스템에 의거하여 전자 증명을 지역, 부처를 뛰어넘어 공유를 실현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국가전자 증명서 업무 기술 규범에 따라 전자 증명서를 제작하고 관리하며 전자 증명서의 목록 데이터를 상급기관에 보고

○ 전자 증명서는 표준 문서형식을 채택하고 전자인감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감을 찍으며 전국적으로 상호 신뢰와 인증을 실현하여 기업과 국민이 업무 처리과정 중 많은 서류와 증명을 제출하는 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5) 데이터 공유의 통일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은 국가인구, 법인, 신용, 지리정보 등 기초데이타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앙부처의 수직적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행정서비스 데이터 공유 수요를 충족

○ 국가 데이터 공유 교환 플랫폼이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인프라가 되고 데이터 교환 통로의 역할을 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행정서비스 데이터 공유수요에 대하여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이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데이터 공유 교환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

○ 데이터 제공자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무원 관련 부문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제공하며, 누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

○ 데이터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유 데이터 사용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안전을 확보하며, 관련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감독 정보와 전자정부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망에서 모든 서비스를 누리는 '일망통향'(一网通享)을 실현

○ 국가전자정부 플랫폼 데이터 자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 행정서비스 태세 분석을 실시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지원을 실시

5. 안전·안정적이며 규범적인 플랫폼 운영 확보

(1) 표준 규범을 완비

○ '급용선행'(급한 것을 먼저 실시), 분류 실시, 성숙시 배포' 원칙에 따라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전체 프레임, 데이터, 응용, 운영, 보안, 관리 등 표준 규범을 서둘러 제정하고 지속 보완하며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규범 마련을 지도

○ 행정서비스 사무, 데이터, 프로세스 등 표준화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통일, 상호연계, 데이터 공유 등을 실현

○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표준규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응용프로그램 보급, 표준규범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수정을 진행하여 표준화로 플랫폼 건설의 일체화와 행정서비스의 규범화를 촉진

(2) 보안 강화

○ 각급 행정서비스 플랫폼 보안시스템의 위험 방어능력을 강화하여 전방위적,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

○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과 정보보안등급제도 등 정보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며 각급 행정서비스 플랫폼 사이버안전 관리 기구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 관리와 심사제도를 수립

○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태세 감지분석을 강화하며 안전위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제때에 통보하고 문제점을 보완

○ 행정 빅데이터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국가 이익, 공공안전, 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

○ 비밀번호 기술제품을 응용하여 신분 인증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 시스템과 서비스를 채택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선도

○ 네트워크 보안전문팀을 설치하고, 응급 대비책을 완벽하게 제정하여 일상 예방, 모니터링, 조기 경보 및 응급 처치 능력을 강화

(3) 운영관리를 개선

○ 통일 운영관리의 요구에 따라 각급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각자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별 관리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운영 관리 시스템을 형성

○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 운영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완비하며 운영 업무 과정을 최적화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운영 자원을 통합하고 플랫폼 운영관리팀을 설치해야 하며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오프라인서비스센터의 운영관리의 조직 협조, 점검 독려, 평가 심사 등 책임을 통일화하고, '한 세트의 제도 관리, 한 팀의 보장'을 추진

(4) 상담 민원의 강화

○ 상하 커버리지, 부처 연동, 표준 통일된 행정서비스 상담 민원체계, 인터넷 상담 민원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서비스 중 이용빈도가 높은 사무와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대응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상담 민원 시스템은 온라인 접수, 업무이관, 업무 감독, 피드백 등 전반적인 상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접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플랫폼 기능을 보완하며 플랫폼 서비스 수준을 향상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행정서비스 플랫폼 전문 상담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문서, 증명서 공유, 결과 송달 등 서비스에 대해 전 과정 감독, 평가 및 신속한 피드백을 추진하여 민원이 해결이 되고 민원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상담 민원 시스템은 중국정부망 인터넷 상담 민원 기능과 연계하여 구축

(5) 평가 강화

○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의거하여 행정서비스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평가를 강화

○ 각급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사이버 안전 업무상황을 성과평가지표 체계에 포함시켜 사이버 보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촉구

○ 각급 행정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사항, 문서, 업무, 이용자 등 정보 데이터를 완비하여 기업 및 국민이 행정서비스 처리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차원적인 대조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 향상

6. 추진 기구(조직)

(1) 조직 지도를 강화

○ 국무원 판공청 주도로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관리협업업무 조직을 구성하여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최상층 설계, 구축, 협업과 감독지도 등 업무를 책임짐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해당 지역·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 협업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총괄 구축과 최적화를 책임짐

(2) 업무 분담 협력을 강화

○ 국무원판공청 주도로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각 지역 및 중앙부처와 함께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표준 규범체계, 보안체계 및 운영관리체계를 구축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해당 지역·부처 행정서비스 플랫폼 건설, 안전보장과 운영관리를 나누어 담당하며 국가행정서비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

○ 중앙부처는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하여 해당 부처의 행정서비스 업무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여 처리하며 부처을 넘나드는 행정서비스 업무는 선두 부처가 담당하고 관련 부처는 적극 협조하며 국무원판공청이 총체적인 조정을 담당

○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역·부처의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지출

(3) 법령 등 제도 완비

○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에 시급한 전자인감, 전자 증명, 전자 문서 등 분야의 법령을 서둘러 제정하며 현행 법령의 개정·폐지 작업도 동시에 추진

○ 부수 정책,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데이터 공유, 사무관리, 업무 협업, 네트워크 보안 등과 관련된 제도를 시급히 완비하여 플랫폼의 구축 관리를 위하여 법령차원의 버팀목 제공

(4)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상시 인력양성 체제를 수립하고 업무 응용, 기술 체계, 운영 관리, 보안, 표준 규범 등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 각 지역과 중앙부처의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관리 경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범사례 전파

○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관리 중 중점 난제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시범실시 경험 및 성과를 확대 보급

(5) 감독 심사를 강화

○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 범위·주기·항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감독 업무의 제도화, 규범화, 표준화, 상시화를 실현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관리를 성과평가에 포함시켜 중점 감독사항으로 추진하고, 제3자 평가도 추진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전국 일체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화를 “放管服”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추진하여야 하며 스케쥴, 로드맵 등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종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각 지역과 중앙부처는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 추진상황을 수시로 국무원판공청에 보고

国务院关于加快推进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的指导意见

国发〔2018〕27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党的十八大以来，各地区各部门认真贯彻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围绕转变政府职能、深化简政放权、创新监管方式、优化政务服务，深入推进“互联网+政务服务”，加快建设地方和部门政务服务平台，一些地方和部门依托平台创新政务服务模式，“只进一扇门”、“最多跑一次”、“不见面审批”等改革措施不断涌现，政务服务平台已成为提升政务服务水平的重要支撑，对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便利企业和群众办事创业发挥了重要作用。但同时，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分散、办事系统繁杂、事项标准不一、数据共享不畅、业务协同不足等问题较为普遍，政务服务整体效能不强，办事难、办事慢、办事繁的问题还不同程度存在，需要进一步强化顶层设计、强化整体联动、强化规范管理，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为深入推进“放管服”改革，全面提升政务服务规范化、便利化水平，更好为企业和群众提供全流程一体化在线服务，推动政府治理现代化，现就加快推进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提出以下意见。

一、总体要求

（一）指导思想。

全面贯彻党的十九大和十九届二中、三中全会精神，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统筹推进“五位一体”总体布局和协调推进“四个全面”战略布局，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牢固树立新发展理念，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更好发挥政府作用，推动“放管服”改革向纵深发展，深入推进“互联网+政务服务”，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整合资源，优化流程，强化协同，着力解决企业和群众关心的热点难点问题，推动政务服务从政府供给导向向群众需求导向转变，从“线下跑”向“网上办”、“分头办”向“协同办”转变，全面推进“一网通办”，为优化营商环境、便利企业和群众办事、激发市场活力和社会创造力、建设人民满意的服务型政府提供有力支撑。

（二）工作原则。

坚持全国统筹。加强顶层设计，做好政策衔接，注重统分结合，完善统筹协调工作机制。强化标准规范，推进服务事项、办事流程、数据交换等方面标准化建设。充分利用各地区各部门已建政务服务平台，整合各类政务服务资源，协同共建，整体联动，不断提升建设集约化、管理规范化、服务便利化水平。

坚持协同共享。坚持政务服务上网是原则、不上网是例外，联网是原则、孤网是例外，推动线上线下深度融合，充分发挥国家政务服务平台的公共入口、公共通道、公共支撑作用，以数据共享为核心，不断提升跨地区、跨部门、跨层级业务协同能力，推动面向市场主体和群众的政务服务事项公开、政务服务数据开放共享，深入推进“网络通”、“数据通”、“业务通”。

坚持优化流程。坚持问题导向和需求导向，梳理企业和群众办事的“难点”、“堵点”、“痛点”，聚焦需要反复跑、窗口排队长的事项和“进多站、跑多网”等问题，充分运用互联网和信息化发展成果，优化政务服务流程，创新服务方式，强化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功能，不断提升用户体验，推动政务服务更加便利高效，切实提升企业和群众获得感、满意度。

坚持试点先行。选择有基础、有条件的部分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部门先行试点，推动在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服务模式、流程优化等方面积极探索、不断创新，以试点示范破解难题、总结做法，分步推进、逐步完善，为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推动实现政务服务“一网通办”积累经验。

坚持安全可控。全面落实总体国家安全观，树立网络安全底线思维，健全管理制度，落实主体责任，强化网络安全规划、安全建设、安全监测和安全态势感知分析，健全安全通报机制，加强综合防范，积极运用安全可靠技术产品，推动安全与应用协调发展，筑牢平台建设和网络安全防线，确保政务网络和数据信息安全。

（三）工作目标。

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推进各地区各部门政务服务平台规范化、标准化、集约化建设和互联互通，形成全国政务服务“一张网”。政务服务流程不断优化，全过程留痕、全流程监管，政务服务数据资源有效汇聚、充分共享，大数据服务能力显著增强。政务服务线上线下融合互通，跨地区、跨部门、跨层级协同办理，全城通办、就近能办、异地可办，服务效能大幅提

升，全面实现全国“一网通办”，为持续推进“放管服”改革、推动政府治理现代化提供强有力支撑。

2018年底前，国家政务服务平台主体功能建设基本完成，通过试点示范实现部分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部门政务服务平台与国家政务服务平台对接。制定国家政务服务平台政务服务事项编码、统一身份认证、统一电子印章、统一电子证照等标准规范，各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有关部门按照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要求对本地区本部门政务服务平台进行优化完善，为全面构建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奠定基础。

2019年底前，国家政务服务平台上线运行，各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与国家政务服务平台对接，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标准规范体系、安全保障体系和运营管理体系基本建立，国务院部门垂直业务办理系统为地方政务服务需求提供数据共享服务的水平显著提升，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框架初步形成。

2020年底前，国家政务服务平台功能进一步强化，各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部门政务服务平台与国家政务服务平台应接尽接、政务服务事项应上尽上，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标准规范体系、安全保障体系和运营管理体系不断完善，国务院部门数据实现共享，满足地方普遍性政务需求，“一网通办”能力显著增强，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基本建成。

2022年底前，以国家政务服务平台为总枢纽的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更加完善，全国范围内政务服务事项基本做到标准统一、整体联动、业务协同，除法律法规另有规定或涉及国家秘密等外，政务服务事项全部纳入平台办理，全面实现“一网通办”。

二、总体架构和任务要求

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由国家政务服务平台、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业务办理系统）和各地区政务服务平台组成。国家政务服务平台是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的总枢纽，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是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的具体办事服务平台。

（一）国家政务服务平台。

国家政务服务平台建设统一政务服务门户、统一政务服务事项管理、统一身份认证、统一电子印章、统一电子证照等公共支撑系统，建设电子监察、服务评估、咨询投诉、用户体验监测等应用

系统，建立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的标准规范体系、安全保障体系和运营管理体系，为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提供公共入口、公共通道和公共支撑。

国家政务服务平台作为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的总枢纽，联通各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实现政务服务数据汇聚共享和业务协同，支撑各地区各部门政务服务平台为企业和群众提供高效、便捷的政务服务。

国家政务服务平台以中国政府网为总门户，具有独立的服务界面和访问入口，两者用户访问互通，对外提供一体化服务。

（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业务办理系统）和各地区政务服务平台。

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统筹整合本部门业务办理系统，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的公共支撑系统，统筹利用政务服务资源，办理本部门政务服务业务，通过国家政务服务平台与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互联互通、数据共享、业务协同，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办理跨地区、跨部门、跨层级的政务服务业务。全国投资项目在线审批监管平台、公共资源交易平台、相关信用信息系统等专项领域国家重点信息系统要与国家政务服务平台做好对接。

各地区政务服务平台按照省级统筹原则建设。通过整合本地区各类办事服务平台，建成本地区各级互联、协同联动的政务服务平台，办理本地区政务服务业务，实现网上政务服务省、市、县、乡镇（街道）、村（社区）全覆盖。各省（自治区、直辖市）政务服务平台与国家政务服务平台互联互通，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办理跨地区、跨部门、跨层级的政务服务业务。

各级政府要依托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整合各类网上政务服务系统，向企业和群众提供统一便捷的服务。国务院有关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政务服务平台按照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统一标准规范及相关要求，全面对接国家政务服务平台，其政务服务门户与国家政务服务平台的政务服务门户形式统一规范、内容深度融合，实现事项集中发布、服务集中提供。鼓励各地区各部门依托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开展个性化、有特色的服务创新。

三、推进政务服务一体化，推动实现政务服务事项全国标准统一、全流程网上办理

（一）规范政务服务事项。

政务服务事项包括行政权力事项和公共服务事项。编制全国标准统一的行政权力事项目录清

单，按照统一规划、试点先行、突出重点、逐步完善的实施路径，以依申请办理的行政权力事项为重点，推动实现同一事项名称、编码、依据、类型等基本要素在国家、省、市、县四级统一。全面梳理教育、医疗、住房、社保、民政、扶贫、公共法律服务等与群众日常生产生活密切相关的公共服务事项，编制公共服务事项清单及办事指南，逐步推进公共服务事项规范化。完善政务服务事项受理条件、申请材料、中介服务、办理流程等信息要素，实现办事要件和办事指南标准化、规范化。建设国家政务服务平台事项库，与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事项库联通，推动实现一库汇聚、应上尽上。建立全国联动的政务服务事项动态管理机制，逐步实现各区域、各层级、各渠道发布的政务服务事项数据同源、同步更新，推动实现同一事项无差别受理、办理流程和评价标准统一。

（二）优化政务服务流程。

按照“一网通办”要求进一步优化政务服务流程，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身份认证、电子印章、电子证照等基础支撑，推动证照、办事材料、数据资源共享互认，压缩办理环节、精简办事材料、缩短办理时限，实现更多政务服务事项的申请、受理、审查、决定、证照制作、决定公开、收费、咨询等环节全流程在线办理。整合优化企业开办、投资项目审批、工程建设项目审批、不动产登记等涉及多个部门、地区的事项办理流程，逐步做到一张清单告知、一张表单申报、一个标准受理、一个平台流转。积极推进多证合一、多图联审、多规合一、告知承诺、容缺受理、联审联办。通过流程优化、系统整合、数据共享、业务协同，实现审批更简、监管更强、服务更优，更多政务服务事项实现“一窗受理、一次办成”，为推动尽快实现企业开办时间再减一半、项目审批时间再砍一半、凡是没有法律法规依据的证明一律取消等改革目标提供有力支撑。

（三）融合线上线下服务。

依托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推进线上线下深度融合，推动政务服务整体联动、全流程在线，做到线上线下一套服务标准、一个办理平台。推动政务服务事项清单、办事指南、办理状态等相关信息在政务服务平台、移动终端、实体大厅、政府网站和第三方互联网入口等服务渠道同源发布。推动政务服务平台和便民服务站点向乡镇（街道）、村（社区）延伸。归集、关联与企业和群众相关的电子证照、申请材料、事项办理等政务服务信息并形成相应目录清单，持续提高办事材料线上线下共享复用水平。

（四）推广移动政务服务。

以公安、人力资源社会保障、教育、卫生健康、民政、住房城乡建设等领域为重点，积极推进

覆盖范围广、应用频率高的政务服务事项向移动端延伸，推动实现更多政务服务事项“掌上办”、“指尖办”。加快建设国家政务服务平台移动端，接入各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有关部门移动端服务资源，提供分级运营、协同联动的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移动端服务。制定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移动端建设指引，明确功能定位、设计展现、应用接入、安全防护、运营保障等内容和要求，指导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集约建设、规范管理。加强对各级政务服务平台移动端的日常监管，强化注册认证、安全检测、安全加固、应用下载和使用推广等规范管理。充分发挥“两微一端”等政务新媒体优势，同时积极利用第三方平台不断拓展政务服务渠道，提升政务服务便利化水平。

四、推进公共支撑一体化，促进政务服务跨地区、跨部门、跨层级数据共享和业务协同

（一）统一网络支撑。

各级政务服务平台原则上统一依托国家电子政务外网构建，通过部署在互联网上的政务服务门户提供服务。拓展国家电子政务外网覆盖范围，加强网络安全保障，满足业务量大、实时性高的政务服务应用需求。推动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非涉密业务专网与电子政务外网对接整合。

（二）统一身份认证。

国家政务服务平台基于自然人身份信息、法人单位信息等国家认证资源，建设全国统一身份认证系统，积极稳妥与第三方机构开展网上认证合作，为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及移动端提供统一身份认证服务。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统一利用国家政务服务平台认证能力，按照标准建设完善可信凭证和单点登录系统，解决企业和群众办事在不同地区和部门平台重复注册验证等问题，实现“一次认证、全网通办”。各地区各部门已建身份认证系统按照相关规范对接国家政务服务平台统一身份认证系统。

（三）统一电子印章。

制定政务服务领域电子印章管理办法，规范电子印章全流程管理，明确加盖电子印章的电子材料合法有效。应用基于商用密码的数字签名等技术，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建设权威、规范、可信的国家统一电子印章系统。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使用国家统一电子印章制章系统制发电子印章。未建立电子印章用章系统的按照国家电子印章技术规范建立，已建电子印章用章系统的按照相关规范对接。

（四）统一电子证照。

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电子证照共享服务系统，实现电子证照跨地区、跨部门共享。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按照国家电子证照业务技术规范制作和管理电子证照，上报电子证照目录数据。电子证照采用标准版式文档格式，通过电子印章用章系统加盖电子印章或加签数字签名，实现全国互信互认，切实解决企业和群众办事提交材料、证明多等问题。

（五）统一数据共享。

国家政务服务平台充分利用国家人口、法人、信用、地理信息等基础资源库，对接国务院部门垂直业务办理系统，满足政务服务数据共享需求。发挥国家数据共享交换平台作为国家政务服务平台基础设施和数据交换通道的作用，对于各省（自治区、直辖市）和国务院有关部门提出的政务服务数据共享需求，由国家政务服务平台统一受理和提供服务，并通过国家数据共享交换平台交换数据。进一步加强政务信息系统整合共享，简化共享数据申请使用流程，满足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数据需求。落实数据提供方责任，国务院有关部门按照“谁主管，谁提供，谁负责”的原则，保障数据供给，提高数据质量。除特殊情况外，国务院部门政务信息系统不按要求与一体化平台共享数据的，中央财政不予经费保障。强化数据使用方责任，加强共享数据使用全过程管理，确保数据安全。整合市场监管相关数据资源，推动事中事后监管信息与政务服务深度融合、“一网通享”。建设国家政务服务平台数据资源中心，汇聚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数据，积极运用大数据、人工智能等新技术，开展全国政务服务态势分析，为提升政务服务质量提供大数据支撑。

五、推进综合保障一体化，确保平台运行安全平稳规范

（一）健全标准规范。

按照“急用先行、分类推进，成熟一批、发布一批”的原则，抓紧制定并不断完善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总体框架、数据、应用、运营、安全、管理等标准规范，指导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规范建设，推进政务服务事项、数据、流程等标准化，实现政务服务平台标准统一、互联互通、数据共享、业务协同。加强政务服务平台标准规范宣传培训、应用推广和贯彻实施，总结推广平台建设经验做法和应用案例，定期对标准规范进行应用评估和修订完善，以标准化促进平台建设一体化、政务服务规范化。

（二）加强安全保障。

强化各级政务服务平台安全保障系统的风险防控能力，构建全方位、多层次、一致性的防护体系，切实保障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平稳高效安全运行。落实《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和信息安全等级保护制度等信息网络安全相关法律法规和政策性文件，加强国家关键基础设施安全防护，明确各级政务服务平台网络安全管理机构，落实安全管理主体责任，建立健全安全管理和保密审查制度，加强安全规划、安全建设、安全测评、容灾备份等保障。强化日常监管，加强安全态势感知分析，准确把握安全风险趋势，定期开展风险评估和压力测试，及时通报、整改问题，化解安全风险。加强政务大数据安全管理，制定平台数据安全管理办法，加强对涉及国家利益、公共安全、商业秘密、个人隐私等重要信息的保护和管理。应用符合国家要求的密码技术产品加强身份认证和数据保护，优先采用安全可靠软硬件产品、系统和服务，以应用促进技术创新，带动产业发展，确保安全可控。加强网络安全保障队伍建设，建立多部门协调联动工作机制，制定完善应急预案，强化日常预防、监测、预警和应急处置能力。

（三）完善运营管理。

按照统一运营管理要求，各级政务服务平台分别建立运营管理系统，形成分级管理、责任明确、保障有力的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运营管理体系。加强国家政务服务平台运营管理力量，建立健全相关规章制度，优化运营工作流程，提升国家政务服务平台作为总枢纽的服务支撑能力。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要整合运营资源，加强平台运营管理队伍建设，统一负责政务服务平台和实体大厅运行管理的组织协调、督促检查、评估考核等工作，推进“一套制度管理、一支队伍保障”。创新平台运营服务模式，充分发挥社会机构运营优势，建立健全运营服务社会化机制，形成配备合理、稳定可持续的运营服务力量。

（四）强化咨询投诉。

按照“统一规划、分级建设、分级办理”原则，形成上下覆盖、部门联动、标准统一的政务服务咨询投诉体系，畅通网上咨询投诉渠道，及时回应和推动解决政务服务中的热点难点问题。国家政务服务平台咨询投诉系统提供在线受理、转办、督办、反馈等全流程咨询投诉服务，与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协同处理，通过受理咨询投诉不断完善平台功能、提升平台服务水平。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建设完善政务服务平台专业咨询投诉系统，与各类政务热线做好对接，对事项上线、政务办件、证照共享、结果送达等事项服务，开展全程监督、评价、投诉并及时反馈，实现群众诉求件件有落实、事事有回应。国家政务服务平台咨询投诉系统做好与中国政府网咨询投诉功能的衔接。

（五）加强评估评价。

依托国家政务服务平台网上评估系统，建立政务服务评估指标体系，加强对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的在线评估。同时，将各级政务服务平台网络安全工作情况纳入评估指标体系，督促做好网络安全防护工作。建立完善各级政务服务平台网上评估评价系统，实时监测事项、办件、业务、用户等信息数据，接受申请办事的企业和群众对政务服务事项办理情况的评价，实现评估评价数据可视化展示与多维度对比分析，以评估评价强化常态化监督，实现全流程动态精准监督，促进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水平不断提升。

六、组织实施

（一）加强组织领导。

国务院办公厅牵头成立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和管理协调工作小组，负责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顶层设计、规划建设、组织推进、统筹协调和监督指导等工作。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要建立健全推进本地区本部门政务服务平台建设和管理协调机制，负责统筹建设和完善本地区本部门政务服务平台，同时做好对接国家政务服务平台等工作。要充分发挥各省（自治区、直辖市）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办公厅的优势，统筹协调各方面力量，抓好各项工作任务落实。

（二）强化分工协作。

国务院办公厅负责牵头推进国家政务服务平台建设，会同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推动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标准规范体系、安全保障体系和运营管理体系。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和管理工作要与转变政府职能、深化“放管服”改革紧密结合。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分级负责本地区本部门政务服务平台建设、安全保障和运营管理，做好与国家政务服务平台对接。国务院有关部门依托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对属于本部门职责范围内的政务服务业务由该部门负责办理，跨部门的政务服务业务由牵头部门负责，相关部门积极配合、协同办理，国务院办公厅负责总体协调。政务服务平台建设和运行所需经费纳入各地区各部门财政预算，做好经费统筹管理使用。通过政府购买服务，鼓励社会力量参与政务服务平台建设。

（三）完善法规制度。

抓紧制修订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运营急需的电子印章、电子证照、电子档案等方

面的法规、规章。同步推进现有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立改废释工作。加快完善配套政策，制定政务服务平台建设运营、数据共享、事项管理、业务协同、网络安全保障等方面管理制度，为平台建设管理提供法规制度支撑。

（四）加强培训交流。

建立常态化培训机制，围绕业务应用、技术体系、运营管理、安全保障、标准规范等定期组织开展培训，加强专业人才队伍建设。建立日常沟通交流机制，以简报、培训、研讨等多种形式开展交流，总结成熟经验，加强推广应用。加强对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经验的宣传推广。针对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中的重点难点问题开展专项试点、区域试点，总结成熟经验，做好试点成果转化推广。

（五）加强督查考核。

建立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督查考核机制，明确督查考核范围、周期和内容，实现督查考核工作制度化、规范化、标准化、常态化。各地区和国务院有关部门要把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纳入工作绩效考核范围，列入重点督查事项。围绕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管理等组织开展第三方评估。充分发挥督查考核的导向作用，形成推进工作的良性机制。

各地区各部门要把加快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建设作为深化“放管服”改革、推进政府治理现代化的重要举措，制定具体实施方案，明确时间表、路线图，加大政策支持力度，强化工作责任，确保各项任务措施落实到位。有关实施方案和工作进展要及时报送国务院办公厅。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부이사관 **황 명 석**

3 일본 수해·토사재해 시 피난(대피)에 관한 제도개선

1.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区) 국제적 특성
2.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체계
3. 미나토구 국제화 추진계획 주요 시책
4. 시사점

일본 수해·토사재해 시 피난(대피)에 관한 제도개선

〈요 약〉

2018년 7월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 8월말 내각부에 설치한 워킹그룹이 방재정보 전달, 주민피난행동 등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여 최근 그 결과를 제출(2018.12.26) 하였으며, 그 내용 등을 우리 정책에 참고 필요

1 추진 배경

○ 일본은 근년에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이 거의 없었으나 2018년 7월 일본서부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받음

○ 7월 호우시 지자체의 피난정보와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가 발표되었지만 피난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여서 큰 문제로 인식 됨

2 7월 호우 재해 이후 주요 여론

○ 비상사태임에도 '자신은 괜찮다'는 위기감이 결여(正常性 편향)된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다수

○ 또한 피난정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 못하는 실정이므로 피난정보 발령기준, 매뉴얼 등을 개선할 필요

3 제도개선 주요 내용안(워킹그룹 제출안)

○ 검토 과제는 ①거주지역 재해리스크의 인식 ②지역의 방재력 ③주택의 고령자의 피난 ④방재정보와 피난행동의 연계 ⑤ 방재정보의 전달 등

○ 실천방안으로 ①재해리스크 지역 全학교에 방재 훈련·교육 ②지역방재리더 육성 ③방재·복지 연계로 고령자 피난행동이해촉진 ④주민주체의 피난행동지원 정보제공 ⑤複數 지역 재해 리스크 일원화 표시 등

4 시사점

○ 일본은 큰 재해발생 후 의견수렴, 평가 등을 통해 방재정책 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민주체' 방재대책 전환의 계기로 활용

– 돌발적 발생 재해로 인해 행정주도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민이 스스로 적절한 피난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강조

2018년 7월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 8월말 내각부에 설치한 워킹그룹이 방재정보 전달, 주민피난행동 등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여 최근 그 결과를 제출(2018.12.26) 하였으며, 그 내용 등을 우리 정책에 참고 필요

1 추진 배경

○ 2018년 7월 일본서부 호우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사망 224명, 주택 6,758채 전파 등 피해가 매우 컸음

– 근년 가장 컸던 호우 피해는 2014년 8월 호우임(74명 사망)

* 총우량은 7월 월강수량의 2~4배였음. 48시간 우량, 72시간 우량 등이 일본 서부 여러 지역에서 관측사상 1위를 기록함. 1부 10현에 특별경보 발령됨.

○ 일본 기상청은 태풍 분석*을 통해 특별경보를 발하기 전날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재해'발생 우려를 전달함

– 태풍 진로예상 자치단체도 피난권고 또는 피난지시를 발령하였음

* 일본의 태풍진로 예보기간이 24시간전 → 48시간전(1989년) → 72시간전(1997년) → 5일전(2009년)까지로 증가하는 등 예보기술이 크게 진보

○ 정확한 예측, 적절한 경보, 많고 유용한 정보제공* 등이 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피해가 큰 것에 대한 유감, 반성이 제기

– 7월 호우 당시 히로시마시는 27만3천명을 대상으로 피난지시를 하였으나 피난장소에 대피한 사람은 9,200명으로 약3.4%에 불과

* NHK방송이 피해자들 대상으로 피난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주변환경악화(33.5%)가 가장 높았고, NHK 등 텔레비전·라디오는 4.5%에 불과

○ 금번 재해발생 경험을 통해서 방재정보와 당면 위험을 어떻게 전달하면 주민의 피난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개인(주민)과 지역의 방재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필요성 제기

2 7월 호우 재해 이후 주요 여론

○ 아사히신문이 7월 호우시 희생자가 많았던 지자체의 長 40명에게 '주민이 피난을 주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실시

– "자신은 괜찮다"라고 하는 위기감의 결여 (36명), "피난정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22명)로 답변

➜ 피해지역 단체장들은 주민의 피난의식 변화가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는 한편, 피난정보 관련 매뉴얼 등 개선도 필요하다고 봄

○ NHK가 피재자(被災者) 310명을 대상으로 최초의 피난계기를 설문

– 주변의 환경 악화(33.5%), 소방·경찰의 요청(14.8%), 가까운 곳의 사람들 요청(9.3%), 가족·친족 요청(7.7%), 방재무선(7.4%), 텔레비전·라디오(4.5%) 順

➜ 피해자 대부분이 재해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피난

○ 재해발생 피난시 방재와 복지의 연계 강화 필요(아사히 사설)

– 7월 호우 재해 당시 쿠라시키市 마비쵸의 사망 51명 중 요배려자(장애인, 고령자 등)가 42명으로 피해가 컸음

➜ 지자체별 要배려자 명단을 작성하고, 개인별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복지전문직을 통한 추진 필요

○ 홍수침수 예상구역의 다수 주거에 대한 우려 제기(요미우리 보도)

– 2015년 시점 3,540만명(1,530만 세대)이 거주. 과거 20년 사이에 이 지역의 인구 4% 증가, 세대수 25% 증가하여 피해가 예상됨.

○ 재난대책본부의 홍수침수 예상구역내 설치 문제 제기(마이니치 보도)

– 주로 재난대책본부로 사용 예정인 시정촌 청사의 34% 정도가 홍수침수 예상구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재해발생 시 문제가 됨을 지적

– 다만 고지대로 이전은 평상시 청사이용 편의성, 이전비용 등 문제

– 7월 호우시 침수를 당한 쿠라시키市 마비쵸 청사(원래 홍수침수 예상구역내 위치)는 그 자리에서 개수공사 중이어서 논란이 됨.

❍ 가장 피해가 많았던 히로시마현 지사(유자키 히데히코) 인터뷰 보도

– 이번 피해는 200년에 1번 정도 있는 호우로 인한 것으로 댐, 제방 등의 설계능력 이상으로 토석류가 발생하여 피해방지에 실패

– 과거 토사재해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 때 고도성장기에 개발된 지역의 경우 강제이주는 어려우므로 移轉정책과 신속 피난이 더욱 중요

– 4년전 피해발생 후 주민대상 피난행동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이번 호우시 주민이 리스크 인식은 했으나 실제 피난행동 연결 부족

– 행정이 피난을 위해 개별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자가 피난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훈련이 부족

– 피난 시 비용과 잔류 시 비용을 비교했을 때 피난 시의 비용이 적도록 피난장소 환경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이 경우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 등의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 전달방법 개선 필요(PAGE 주간지)

– 기상청이 호우에 대해 미리 기자회견을 통해 재해발생 우려를 전달하였음에도 실제 주민들의 피난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음

– 기상청의 기상정보 전달 시 위기감이 전달되지 않았고, 관련 방재정보가 복수로 있어서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

❍ 기상예보사* 등 전문가 활용으로 지역방재력 제고 (아사히 사설)

– 자치단체에 기상예보사를 어드바이저로 파견하여 방재직원 훈련을 지원(강수량 예측, 단체장에 대한 조언방법 등)하는 사업 확대 필요

* 25년 전에 신설된 국가자격으로 누계 1만명 합격하였으나 활용이 저조

❍ 각 개인(세대)마다 'My Time Line' 작성 필요 (도쿄FM 라디오)

– 예를 들어 홍수침수 예상 구역도를 참고해서 자택이 얼마나 침수되는지 확인하고, 태풍이 오기 3일전에는 무얼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각자가 작성해야 함

3 피난정보(避難情報) 제도관련 현황

○ (발령) 피난정보는 재해대책기본법(제60조)에 의해 각 시정촌장이 발령

○ (3레벨) 피난준비·고령자 등 피난개시, 피난권고, 피난지시(긴급)
- **(피난준비·고령자 등 피난개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미리 피난을 재촉
- **(피난권고)** 위험도가 높아져서 주민에게 피난을 요청
- **(피난지시(긴급))** 바로 임박한 위험이 있어 신속히 피난하도록 요구하는 것

※ 다만 피난지시 등 모두 강제력은 없음

○ (운영) 발령기준이나 전달방법은 내각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시정촌별로 다르게 운영

○ (내각부 가이드라인) 시정촌이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이나 전달방법, 방재체제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시정촌 담당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
- 2005년 책정 후 2014년, 2015년, 2017년 개정하였음

〈7월 호우 관련 기상·재해경계정보와 피난정보〉



4 제도개선 주요 내용안 (워킹그룹 제출안)

1. 피난에 대한 기본자세

가. 현상

○ 행정은 방재대책의 충실에 부단의 노력을 계속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상황의 격화와 행정인력의 한계 등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격심한 재해에의 '행정주도'의 Hard, Soft 대책에 한계

○ 방재대책을 이후도 유지·향상하기 위해 국민전체의 공통이해 아래 '주민 주체의 방재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나. 지향하는 사회

○ (주민)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진다.
- 평시부터 재해 리스크나 피난행동 등에 대해 파악한다.
- 지역의 방재리더 아래 피난계획 작성, 피난훈련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방재력을 높인다.
- 재해시에는 자신이 판단하여 적절히 피난행동을 한다.

○ (행정) 주민이 적절한 피난행동을 취하도록 전력으로 지원한다.
- 평시부터 재해 리스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세대주민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방재교육, 피난훈련 등을 실시하여,
-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지역의 재해리스크와 취해야 할 피난행동 등을 주지한다.
- 재해시에는 피난행동이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방재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다. 실천 전략

① 재해 리스크가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보급·계몽

- (아동) 재해 리스크가 있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피난훈련·방재교육

– (지역) 전국에서 지역방재리더를 육성하여 방재력 강화
– (고령자) 방재와 복지간 연계로 고령자의 피난행동 이해를 촉진

② 전국에서 전문가에 의한 지원체제 정비

– 재해 리스크 지역주민의 보급·계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방재전문가에 의한 지원체제를 구축

③ 주민행동을 지원하는 방재정보제공

– (리스크 정보) 지역의 재해 리스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 리스크 정보를 집약해서 일원화하여 표시
– (방재 정보) 방재정보를 5단계 경계 레벨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각 정보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2. 학교에서의 방재교육·피난훈련

❍ (필요성) 생명을 지키는 행동(피난)을 어릴 때부터 실천적으로 배워서 자기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이 조성된 지역사회 구축 필요
– 아이들이 지역의 리스크 등을 아는 것이 중요

❍ (목표) 방재관계기관* 지원 아래 수해·토사재해의 리스크가 있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매년 장마·태풍 시기 전까지 훈련교육 체제 구축
– 수방법·토사재해방지법에 기초한 피난확보계획을 책정하고, 피난훈련을 모든 초·중학교에서 교육단계에 맞게 실시(2021년도까지)
* 하천·사방담당부서(국가·광역), 기상대, 시정촌 방재부서
* 침수 상정 구역내·토사재해구역내에 위치하여 수방법, 토사재해방지법에 기초한 지역방재계획에 포함된 학교

❍ (교육내용) 방재교육과 피난훈련간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 재해 리스크 및 방재정보에 의한 피난장소나 피난타이밍 등 확인
* (사례) 아이치현 도요타시 초등학교에서 하천범람으로 학교건물이 3층까지 침수될 것으로 예상하여 근처 쇼핑몰을 피난장소로하여 대피훈련을 실시

3.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피난에 관한 사업 강화

○ (문제점)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지역리더가 수해·토사재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지역방재리더 육성) 각 지역에서 자조·공조 사업*의 적절하고 계속적인 실시를 위해 방재에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한 지역방재리더 육성

– 수해·토사재해·방재기상정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지원을 통해 지역방재리더 육성

* 재해·피난카드 작성, 지역방재계획 책정 등

○ (전문가 활용) 재해시의 피난권고 등 발령 판단이나 평시의 해저드 맵의 작성·주지, 피난훈련 등 시정촌의 방재대응능력 유지·제고에도 중요

– 국가에서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서 공동 활용

4. 방재와 복지의 연계에 의한 고령자 피난행동에 대한 이해촉진

○ (필요성) 고령자가 지역에서 안심·안전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 시 적절한 피난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평상시부터 고령자 개개인이 지역과 연계해서 재해 리스크나 피난장소, 피난타이밍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

○ (방재 분야) 수해에 있어서는 대규모 범람감재협의회*에서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방재·감재 사업을 관계자들이 연계해서 실시 중

* 수방관리자, 시정촌, 하천관리자, 기상대로 구성 (광역 또는 정령시에 설치)

○ (복지 분야) 고령자에의 평상시 생활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나 케어 매니저가 중심으로 실시 중

* 사회복지사, 주임 케어 매니저, 보건사 등으로 구성 (시정촌이 설치)

○ (내용) 방재·감재 사업실시 기관과 지역포괄지원센터·케어 매니저가 연계하여 수해로부터 고령자 피난행동의 이해촉진을 위한 사업 실시

* (사례) 케어 매니저 자격연수 시에 재난대응교육을 실시(해저드 맵 등 설명)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 내에 해저드 맵 게시, 방재 팜플렛 설치 등

5. 주민주체의 피난행동 등을 지원하는 방재정보의 제공

○ (필요성) 평상시의 재해 리스크 및 취해야 할 피난행동의 주지와 더불어,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해서 주민의 피난행동 등을 지원하는 방재정보의 발신이 필요

– 재해대응을 담당하는 시정촌이 적시에, 정확하게 피난권고 등을 발령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개선 내용

– (포인트 1) 방재정보를 5단계 경계 레벨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 수용자가 정보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주민의 주체적인 행동을 지원

– (포인트 2) 경계 레벨 4에 피난권고, 피난지시(긴급), 경계레벨 5에 재해발생을 설정하고 피난 타이밍을 명확화

– (포인트 3) 피난권고 등의 발령에 기여하는 정보를 기상청, 시설관리자 등이 시정촌에 제공하여 시정촌의 발령판단을 지원

〈경계 레벨 개선안〉

<table>
<tr><th>경계 레벨</th><th>주민이 해야할 행동</th><th>피난정보 등
(시정촌)</th><th>방재기상정보 · 수위정보 등
(기상청, 국토교통성, 도도부현)</th></tr>
<tr><td rowspan="2">(홍수 · 토사재해)
경계 레벨5</td><td rowspan="2">이미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td><td>행동을 재촉하는 정보</td><td>스스로 행동을 취할때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시정촌의 피난권고의 발령에 도움이 되는 정보)</td></tr>
<tr><td>재해의 발생
(가능한 범위에서 발표)</td><td rowspan="3">지정하천홍수예보, 토사재해경계정보,
경보, 위험도분포 등

✓주민의 자발적인 피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포
✓기상청과 시설관리자 등이 연계해서 피난정보의 레벨별로 발령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정촌에 푸시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td></tr>
<tr><td>(홍수 · 토사재해)
경계 레벨4</td><td>· 신속히 퇴거피난 등
· 즉시 생명을 지키는 행동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td><td>· 피난권고
· 피난지시(긴급)</td></tr>
<tr><td>(홍수 · 토사재해)
경계 레벨3</td><td>고령자 등은 퇴거피난
그 외는 퇴거피난 준비 등</td><td>·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td></tr>
<tr><td rowspan="2">(홍수 · 토사재해)
경계 레벨2</td><td rowspan="2">피난에 대비하여 스스로 피난행동을 확인
· 해저드 맵 등으로 재해 리스크, 피난장소,
피난경로, 피난 타이밍 등 재확인
· 피난정보 파악 수단의 확인, 주의 등</td><td colspan="2">행동을 재촉하는 정보</td></tr>
<tr><td colspan="2">주의보</td></tr>
<tr><td>(홍수 · 토사재해)
경계 레벨1</td><td>재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높임
· 방재 기상정보 등 최신 정보에 주의</td><td colspan="2">경보급의 가능성*
(* 경보급의 현상이 예상될 때 그 가능성을 高 · 中 2단계로 발표하는 정보)</td></tr>
</table>

〈주의사항〉

- 주민의 피난행동은 각 개인의 주거지 지형, 주택 구조, 가족 구성원 등의 차이에 맞게 적절한 피난행동이 필요, 피난의 타이밍은 각 개인이 다른 것에 주의가 필요
- 경계 레벨 1~5는 반드시 순서대로 전부 발표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가 필요 (예로 급격한 기상상황의 변화로 경계 레벨3-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 개시가 발령되지 않고 경계 레벨4-피난권고, 피난지시(긴급)가 발령되는 경우도 있음)
- 시정촌이 발령하는 피난권고 등은 시정촌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발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촌의 피난 권고 등의 발령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나와도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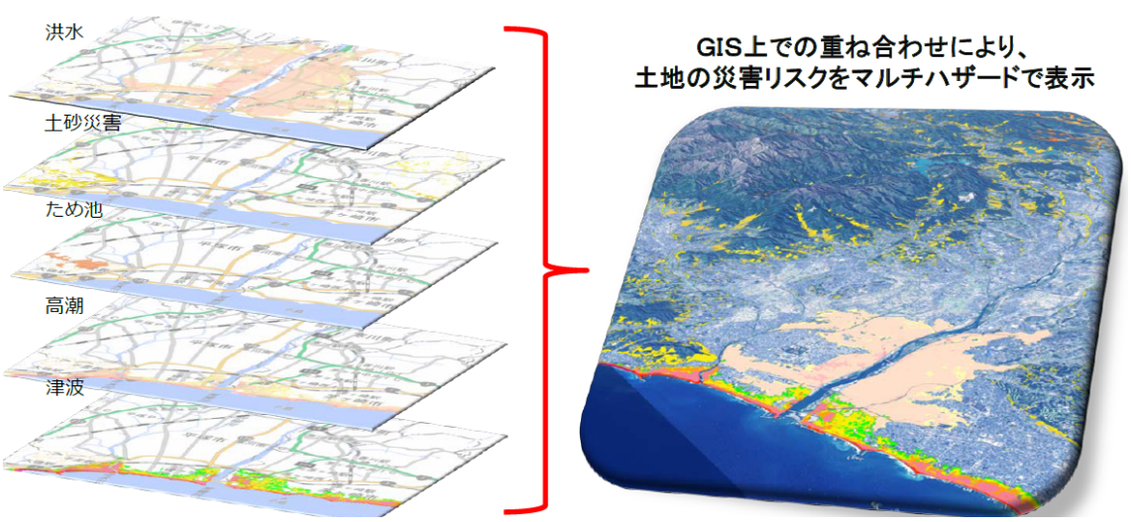
6. '멀티 해저드'의 리스크 인식

○ (필요성) 지역의 재해 리스크에 대응하는 피난행동을 취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 평상시부터 이해하고, 재해 시에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

- 2018년 7월 호우의 경우 홍수, 토사재해, 저수지 붕괴 등 다양한 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멀티 해저드 사례였음

○ (목표) 복수의 재해 리스크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의 리스크 정보 등을 겹쳐서 표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사례) 홍수, 토사재해, 저수지, 고조, 쓰나미 등을 동일지역에 겹쳐서 표시하고 각 정보를 충실히 함



5 시사점

❍ 일본 정부, 언론, 전문가* 등은 2018년 7월 호우 같은 재해는 기존의 방재대책과 주민의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

– 앞으로도 태풍, 호우 등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 대책으로 방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이번 내각부 워킹그룹 참여자 : 동경대 방재정보연구센터장 등 13명

❍ 기상청이 5일전, 1일전, 당일 등 수시로 예보와 경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서 대피를 못해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방재정책 전환 인식 계기

– 일본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방재정책이 선진화되어 있음에도 주민의 피난정보 인식이 낮고 실제 피난이 저조한 것은 충격적

– 행정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민주체' 방재대책으로 전격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전문가들이 적극 제안

❍ 방재정보, 피난정보를 현행 3레벨에서 5레벨로 하고 피난권고와 피난지시를 4단계에서 함께 하도록 하여 신속한 피난을 유도

– 또한 1단계와 2단계를 추가하여 마음가짐, 피난경로, 피난타이밍, 피난장소, 피난정보 파악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있음

❍ 이후 내각부는 워킹그룹 제출의견을 참고하여 여러 제도 개선과 함께 피난권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일본 총무성에서 가이드라인 중 피난정보 발령문 등을 개선 중이며 더불어서 외국어*로도 준비 중에 있음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 중이며 한국어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지원

❍ 이번 개선 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방재력 강화 방안(지역방재리더 육성, 전문가지원체계), 학교 교육 강화, 멀티 해저드 표시시스템 등도 이후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일본 2018년 7월 호우 재해 현황 및 주요 특징

❍ 일본 서부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 기록적인 폭우(1府10縣에 특별경보 발표)
❍ 각 지역에서 하천범람, 토사 재해가 발생하여, 1府13縣에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 · 행방불명자가 발생 (호우피해 平成 최대 인명피해)

□ 7월 호우 특징

❍ 장마전선과 태풍7호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일본 서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기록적인 호우 발생

❍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총강우량은 四国地方에서 1800미리, 東海地方에서 1200미리를 초과하는 등 7월 월강수량 평년치의 2~4배가 내린 지역도 있음

❍ 48시간 강우량, 72시간 강우량이 中国地方, 近畿地方 등 다수 지역에서 관측사상 1위를 기록

□ 피해 상황

❍ 인명 피해 : 232명 (사망자 224명, 행방불명 8명)
※ 당시 재해발생시 약 4만2천명 피난소에 대피

❍ 가옥 피해 : 전파 6,758동, 침수(마루위) 8,567동

❍ 전 력 : 약 8만호 정전

❍ 철 도 : 32개 사업자 115노선 운행정지

❍ 고속도로 : 17노선, 19구간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통행금지

【참 고: 지역별 인명피해 현황】

구분	기후	시가	교토	효고	나라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에히메	고치	후쿠오카	사가	미야자키	가고시마	합계
사망	1	1	5	2	1	61	109	3	29	3	4	2	1	2	224
행방불명	0	0	0	0	0	3	5	0	0	0	0	0	0	0	8
계	1	1	5	2	1	64	114	3	29	3	4	2	1	2	232

붙임 2 일본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경위

◇ **현행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05년 제정 후 그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최근 2017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2018년 일본서부 7월 호우 피해 이후 '2018년 7월 호우에 따른 수해·토사재해로 인한 피난'에 관한 워킹 그룹 의견 등을 반영 다시 개정할 것으로 보임**

□ 주요 개정 경위

◎ 2005년 3월, 2004년의 재해로 다수의 배려대상자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 피난권고 발령의 주저 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 피난해야 할 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

➤ 일반 거주자의 피난준비와 배려대상자의 피난개시라는 두 종류의 의미를 담은 「피난준비정보」를 규정

◎ 2014년 4월, 동일본대지진 및 2009년 효고현 사요쵸(兵庫県佐用町)의 피난과정 중의 재해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

➤ 가옥 내에서의 안전 확보(옥내안전 확보) 또한 「피난행동」의 하나로 명시함

➤ 피난권고 등은 헛수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속히 내는 것을 강조함

➤ 시정촌(市町村)의 방재체제의 단계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명시함

➤ 피해권고 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이며 알기 쉬운 지표로 명시함

➤ 피해권고 등의 발령기준 설정에 대해 조언을 구할 상대의 명확화 등

◎ 2015년 8월, 2013년의 이즈오시마(伊豆大島), 2014년의 히로시마시(広島市)의 대규모 토사재해에 있어서의 피난권고 발령 주저 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 피난준비정보의 활용(피난준비정보의 단계부터 자발적으로 피난을 개시할 것을 권장)

➤ 피난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대피장소로의 대피, 옥내에서의 안전확보 조치도 피난행동으로 인지함

➤ 거주자에 대한 정보전달은 PUSH형과 PULL형을 조합한 다양화 · 다중화

◎ 2017년 1월 개정

➤ 2016년 3월 중앙방재회의 「수해 시 피난 · 응급 대책 검토 WG」 보고 (2015 관동 · 토호쿠(関東 · 東北) 호우)

➤ 2016년 12월 「피난권고 등의 판단 · 전달 매뉴얼 작성 가이드라인에 관한 검토회」 보고

□ 2017년도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2017. 1월)

【피난정보의 명칭】

- 2016년 태풍 10호에 의한 수해 당시, 이와테현(岩手県) 이와이즈미정(岩泉町)의 고령자 시설에서 피난준비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전해지지 않아 적절한 피난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피난을 개시할 단계임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피난정보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변경전)		(변경후)
「대피준비정보」	→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피난권고」	→	「피난권고」
「피난지시」	→	「피난지시(긴급)」

【주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

◎ 피난권고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 정보제공의 방법

- ➤ 피난권고 등을 발령할 때에는 그 대상자를 명확화 함과 동시에 각 대상자 별로 취해야 할 피난행동을 알기 쉽도록 전달할 것
- ➤ 평상시부터 거주자 등에게 그 토지의 재해 리스크 정보 및 재해 시 취해야 할 피난행동에 대해 주지시킬 것
- ➤ 최근의 재해실적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 ➤ 지역 내 캠페인, 하천의 영상정보 등 거주자 등의 대피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배려대상자의 대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 배려대상자의 이용시설은 그 설치목적을 바탕으로 한 시설 별 규정(개호보험법 등)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별 규정(수방법 등)에 따라 재해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시설 별 규정에 대해서는, 재해계획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난도 그 대상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이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세울 것

➤ 배려대상자 이용시설로 정보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담당부서 등과 제휴하여 정보 전달체제를 마련해둘 것

➤ 재해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피난훈련의 철저한 실시를 철저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주저 없이 피난권고 등을 발령하기 위한 시정촌(市町村) 체제의 구축

➤ 재해 발생 시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해 시에 우선해야 할 업무들을 압축하고, 그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둘 것

➤ 전 부서를 범위로, 재해 시 담당할 업무의 분담 체제 및 발령에 직결하는 정보를 그 수장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 유사시 하천관리자 혹은 기상대 직원, 과거 경험자, 방재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지견을 활용할 수 있는 방재체제를 평상시에 구축해둘 것

➤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상황도 미리 상정하여, 실제 위급상황 시의 전달수단을 충실하게 마련할 것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실천 및 훈련을 통한 개선을 반복할 것

【가이드라인의 명칭 및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 개선, 간이 팜플렛 첨부 및 참고사례 소개】

● 시정촌(市町村)의 피난권고 등의 판단 · 전달뿐만 아니라, 피난권고를 받는 이의 입장도 반영한 종합적 제도를 도모했기에, 가이드라인의 명칭을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함

● 홍수 등에 대한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에 관하여 다양한 판단요소를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재해 시에 취해야 할 피난행동을 간결하게 정리한 팜플렛의 첨부

● 피난권고의 구체적인 발령기준 책정에 관한 시정촌의 지원, 시정촌 수장으로의 핫라인, 거주자에의 전달방법, 피난처 등에 관한 참고사례를 소개

붙임 3 현행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요 및 발췌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시정촌(시읍면)이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이나 전달방법, 방재체제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시정촌 담당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2005년 책정, 2014년 전면개정, 2015년 일부개정 2017년 개정)

〈〈피난행동〉〉

(거주자 · 시설관리자 등에게 요구하는 피난행동)

*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행정에 과도한 기대 및 의존을 하지 말고, 본인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착각(정상성 편견)에 빠지지 않으며, 거주자 등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난행동을 취할 것

* 예상을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할 것도 고려하여, 위험을 느끼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피난행동을 취할 것

* 시설관리자 등은 시정촌이나 소방단, 거주자 등의 지역사회와도 제휴를 도모하여, 피난 시에 지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입원환자나 시설입소자 등 이동이 어려운 배려대상자는 지정된 긴급피난장소와 그곳까지의 경로를 확인해 두고, 그와 동시에 이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정된 긴급피난장소까지의 적절한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및 사태가 급변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의 피난 및 옥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수준에 맞는 복수의 피난처를 평상시에 확보해둘 것

* 방재지식의 계속적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자료를 통해 아동을 포함하는 방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지정 긴급피난장소와 지정 피난소)

* 시정촌은 조기에 지정을 완료하고, 그와 함께 재해의 각 종류별로 대응할 지정 긴급피난장소로의 피난에 대하여, 거주자 · 시설관리자 등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

* 각 시정촌 내에 지정 긴급피난장소나 피난경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촌 구역을 넘어선 피난 방법을 검토할 것

* 행정직원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아도, 자주 방재조직을 비롯한 지역 거주자 등에 의해 잠금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정보전달〉〉

(피난권고 등을 받는 입장에 선 정보제공의 방법)

* 시정촌은 거주자 · 시설관리자 등이 과거의 재해실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거주자, 시설관리자 등에 대해 재해 리스크 정보나 재해 시 대상자가 취해야 할 피난 행동에 대해 주지시킬 것

*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재해 위험이 발생할 때까지 피난권고 등의 발령 전망, 발령 시에 대상자가 취해야 할 피난행동 등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거주자 · 시설관리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것

* 피난권고 등을 발령할 때에는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상자 별로 취해야 할 피난 행동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할 것

* 배려대상자 이용시설 등의 재해계획에는 자연재해로부터의 대피를 포함시킨 계획이어야 함을 평상시부터 시설관리자에게 주지시킬 것

(전달수단과 방법)

* 방재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고 확실한 전달을 위하여, 또한 기기나 시스템 등에 예기치 않은 트러블 등이 발생할 상황도 상정하여, 공통정보를 가능한 한 다양한 전달수단들을 조합해 전달할 것

* 전달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각 전달수단의 점검 및 재해를 상정한 조작 훈련 등을 실시할 것

〈〈발령기준〉〉

(피난권고 등 발령의 판단기준의 기본적 사고방식)

* 피난권고 등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양치기소년' 사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난권고 등을 발령할 것.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판단기준을 설정할 것

* 토사 재해나 수위 주지(周知) 하천, 그 외 하천 등에 의한 침수에 대해서는, 돌발성이 높고 정확한 사전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주저 없이 피난권고 등을 발령할 것

*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를 발령했다고 해서 반드시 피난권고 ·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이 사라진 경우에는 피난준비 · 고령자 등의 피난개시 발령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 하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피난준비 · 고령자 등의 피난개시를 발령할 것

* 사태가 급변하여 재해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피난권고, 피난지시(긴급)의 순서로 발령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단계를 밟지 않고 피난권고 등을 발령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

* 가령 지정 긴급피난장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은 야간 및 외출이 위험한 상태일지라도, 재해가 임박한 상태라면 원칙으로서 피난권고 등을 발령할 것

(판단기준 설정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조언)

* 지정 행정기관이나 도도부현(都道府県) 등은 실시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각종 재해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진 경우뿐만 아니라 피난권고 등의 판단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할 것

〈〈방재체제〉〉

(전 관청을 아우르는 방재체제)

* 재해 시에는 직원의 대응능력을 크게 넘어선 업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재해 시에 우선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해두고 그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둘 것

* 상기의 우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 관청을 아우르는 역할분담 체제를 구축해둘 것

* 피난장소 운영비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피난권고 등의 발령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실제 지출한 지정 긴급피난처의 운영비용을 보상하는 시장회 · 정촌회의 보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난장소를 신속하게 개설하며, 피난권고 등을 적시에 적절히 발령할 수 있도록 해둘 것

(하천관리자나 기상대 직원, 그 경험자, 방재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지견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 만일의 경우에 하천관리자나 기상대로부터의 연락을 지방공공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하천관리자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구조를 구축해둘 것

* 방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위 상승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큰 하천과,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중소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피난권고 등의 발령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방재계획을 비롯한 각종 계획과 발령기준의 책정단계에서부터 하천관리자 및 기상대 직원, 경험자, 방재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지견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둘 것

(훈련 및 연수)

* 다양한 재해 발생 상황을 고려한 피난권고의 발령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시정촌 공무원들은 도도부현(都道府県) 등이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하도록 힘쓸 것

* 상기 내용에 대하여 훈련 및 실천을 통해서 개선을 거듭할 것.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전달문 例(홍수)]

1) 피난준비, 고령자 등 피난개시 전달문의 예

* 긴급방송, 긴급방송,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발령

* 여기는 ○○시(市)입니다.

* ○○지구 ○○강에 관한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 개시를 발령했습니다.

* ○○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수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피난을 시작하십시오.
  –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분, 어린 아이가 있는 분 등 피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과 그 대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피를 시작하십시오.
  – 강변에 살고 계시는 분(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는 등, 빠른 피난이 필요한 지구가 있는 경우에 언급)은 피난을 시작하십시오.

* 그 외 분들은 피난준비를 한 뒤 기상정보에 주의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조속히 피난하십시오.

* 피난장소로의 피난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피난하십시오.

2) 피난권고 전달문의 예

* 긴급방송, 긴급방송, 피난권고 발령

* 여기는 ○○시(市)입니다.

* ○○지구 ○○강에 관한 피난권고를 발령했습니다.

* ○○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 신속하게 피난을 시작하십시오.

* 피난장소로의 피난이 위험한 경우,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피난하거나, 옥내의 높은 곳으로 피난하십시오.

3) 피난지시(긴급) 전달문의 예

* 긴급방송, 긴급방송, 피난지시 발령

* 여기는 ○○시(市)입니다.

* ○○지구 ○○강에 관한 피난지시를 발령했습니다.

* ○○강의 수위가 제방을 넘을 우려가 있습니다.

* 아직 피난하지 않으신 분은 긴급히 피난하십시오.

* 피난장소로의 피난이 위험한 경우,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긴급히 피난하거나, 옥내의 높은 곳으로 긴급히 피난하십시오.

* ○○지구에서 제방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침수로 인해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피난하고 계는 분은 지금 바로,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긴급히 피난하거나 옥내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십시오.

	퇴거 피난이 필요한 거주자 등에게 요구하는 행동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 피난에 시간이 걸리는 배려 대상자와 그 지원자는 퇴거 피난한다. – 그 외 사람들은 퇴거피난의 준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후의 방재 기상정보, 수위정보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발적으로 피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돌발성이 높아 예측이 어려운 토사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구역 및 급격한 수위상승의 우려가 있는 하천 주변에서는 피난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해당 재해에 대응한 지정 긴급피난장소로의 퇴거 피난이 강하게 요구된다.
피난 권고	– 예상되는 재해에 대응한 지정 긴급피난장소로 신속하게 퇴거 피난한다. – 지정 긴급피난장소로의 퇴거 피난이 오히려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1)로의 피난이나, 조금이라도 생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은 피난행동으로서 옥내 안전확보'(※2)를 실시한다.
피난지시(긴급)	– 이미 재해가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아직 피난하지 않은 자는 예상되는 재해에 대응한 지정 긴급피난장소로 긴급히 피난한다. – 지정 긴급피난장소로의 퇴거 피난은 오히려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1)로의 피난이나, 조금이라도 생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은 피난행동으로서 '옥내 안전 확보'(※2)를 실시한다.

※ 1 가까운 안전한 장소: 지정 긴급피난장소는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보다 안전한 장소 · 건물 등
※ 2 옥내 안전 확보: 그 시점에 본인이 있는 건물 안에서, 보다 안전한 방 등으로의 이동
주: 돌발적인 재해의 경우, 시정촌 장으로부터의 피난권고 등의 발령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주저 없이 자발적으로 피난한다. 특히, 쓰나미에 대해서는 강한 흔들림 또는 장시간에 걸쳐 약한 흔들림을 느낀 경우, 기상청의 쓰나미 경보 등의 발표나 시정촌 장으로부터의 피난지시(긴급)의 발령을 기다리지 말고, 거주자 등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퇴거 피난할 필요가 있다.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발령기준 例(홍수)]

※ 피난권고 등의 발령기준은, 수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 수위상승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다.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홍수 예보 하천〉

1: 지정하천 홍수예보에 의해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피난판단 수위인 ○○m에 도달했다고 발표되고, 또한 수위예측에 있어 지속적인 수위상승이 전망되는 경우
2: 지정하천 홍수예보의 수위예측에 의해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급격한 수위 상승에 의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미한 누수, 침식 등이 발견된 경우
4: 피난준비, 고령자 등 피난개시 발령이 필요한 강한 강우를 동반한 태풍 등이, 야간부터 새벽까지 접근 ·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위 주지(周知)의 하천〉

1: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피난판단 수위인 ○○m에 도달한 경우
2: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수방단(水防団 : 수해방지단체) 대기 수위 (또는 범람주의 수위)를 넘은 상태로, 다음 13개 항목 중 어느 한 이유에 의해 급격한 수위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① B지점 상류의 수위관측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경우
② A강의 유역 강우량지수(流域雨量指数)의 예측 수치가 홍수경보 기준에 도달한 경우
③ B지점 상류에서 대량 혹은 강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실황우량이나 예측우량에 있어서 누적(累加)우량이 ○○mm이상 또는 시간우량이 ○○mm이상 된 경우)
3: 경미한 누수, 침식 등이 발견된 경우
4: 피난준비, 고령자 등 피난개시 발령이 필요한 강한 강우를 수반한 태풍 등이, 야간부터 새벽까지 접근 ·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피난판단 수위, 범람주의 수위, 수방단 대기 수위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2대신 홍수경보 발표에 더하여 상기의 ①~③을 참고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 2에 대해서는, 하천의 상황에 따라 ①~③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하나 혹은 복수 선택할 것

〈기타 하천 등〉

1: A강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m (수방단 대기수위 등)에 도달하여, 다음 ①~③ 항목 중 어느 한 이유에 의해 지속적인 수위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① B지점 상류의 수위관측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
② A강 유역우량지수의 예측 수치가 홍수경보 기준에 도달한 경우
③ B지점 상류에서 대량 혹은 강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실황우량이나 예측우량에 있어서 누적우량이 ○○mm이상 또는 시간우량이 ○○mm이상이 된 경우)
2: 경미한 누수, 침식 등이 발견된 경우
3: 피난준비, 고령자 등 피난개시의 발령이 필요한 강한 강우를 수반한 태풍 등이 야간부터 새벽까지 접근 ·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1에 대해서는 하천의 상황에 따라 ①~③ 중, 적절한 방법을 하나 또는 복수 선택할 것.
※ 수위를 관측하고 있지 않는 경우, 1 대신 홍수경보 발표에 더해 상기의 ② 또는 ③을 참고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피난권고〉〉

〈홍수 예보 하천〉

1: 지정하천 홍수예보에 의해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위험 수위인 ○○m에 도달했다고 발표된 경우 (또는 해당 시정촌 · 구역의 위험수위에 해당하는 ○○m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지정하천 홍수예보의 수위 예측에 의해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제방 둑 마루 높이 (또는 배후 지반 높이)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급격한 수위상승에 의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정상적인 누수, 침식 등이 발견된 경우
4: 피난권고 발령이 필요한 강한 강우를 수반한 태풍 등이 야간부터 새벽까지 접근 ·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4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삼을 지 판단할 것

〈수위 주지(周知)의 하천〉

1: A강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위험수위(홍수특별경계수위)인 00m에 도달한 경우
2: A강의 B수위관측소의 수위가 범람주의 수위(또는 피난 판단 수위)를 넘은 상태로, 다음의 1~3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급격한 수위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① B 지점 상류 수위 관측소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② A강 유역 우량 지수의 예측치가 홍수 경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③ B지점 상류에서 대량 또는 강한 강우가 전망되는 경우(실황우량이나 예측우량에 있어서 누적우량이 ○○mm이상 또는 시간우량이 ○○mm이상이 되는 경우)

3: 비정상인 누수, 침식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4: 피난권고의 발령이 필요한 것 같은 강한 강우를 수반하는 태풍 등이 야간으로부터 새벽에 접근·통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에 대해서는, 하천의 상황에 따라 1~3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하나 또는 복수 선택하는 것

※ 4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

〈기타 하천 등〉

1: A강의 B수위관측소 수위가 ○○m (범람주의 수위 등)에 도달하여, 다음의 ①~③ 중 어느 한가지 이유에 의해 지속적인 수위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① B지점 상류의 수위관측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

② A강 유역우량지수의 예측 수치가 홍수경보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경우

③ B지점 상류에서 대량 혹은 강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실황우량이나 예측우량에 있어서 누적우량이 ○○mm이상 또는 시간우량이 ○○mm이상이 될 경우)

2: 비정상적인 누수, 침식 등이 발견된 경우

3: 피난권고 발령이 필요한 강한 강우를 수반한 태풍 등이 야간부터 새벽까지 접근·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1에 대해서는, 하천의 상황에 따라 ①~③ 중, 적절한 방법을 하나 또는 복수 선택할 것

※ 3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삼을지 판단할 것

※ 수위를 관측하고 있지 않는 경우나 기준이 되는 수위의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의 수위 기준 대신 상기 ② 또는 ③을 참고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카메라 영상 및 수방단의 보고 등을 활용해 발령한다.

〈〈피난지시(긴급)〉〉

〈홍수 예보 하천〉

1: 결궤(決壞 : 둑이 무너짐)나 월수(越水 : 물이 샘)·일수(溢水 : 물이 넘침)가 발생한 경우

2: A강의 B수위관측소 수위가 범람위험 수위인 (또는 해당 시정촌·구역의 위험수위에 해당하는)

○○m를 넘은 상태에서, 지정하천 홍수예보의 수위예측에 의해 제방 둑마루 높이 (또는 배후 지반 높이)인 ○○m에 도달할 우려가 높은 경우(월수 · 일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정상인 누수, 침식의 진행이나 균열, 미끄러움 등에 의해 결궤의 우려가 높아진 경우

4: 통문, 수문 등 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령 대상 구역을 한정함)

〈수위 주지(周知)의 하천〉

1: 결궤나 월수 · 일수가 발생한 경우

2: A강의 B수위관측소 수위가 제방 높이 (또는 배후 지반 높이)인 ○○m에 도달할 우려가 높은 경우 (월수, 일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정상적인 누수 · 침식의 진행이나 균열 · 미끄러움 발생 등에 의한 결궤의 우려가 높아진 경우

4: 통문, 수문 등 시설의 기능 지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령 대상구역을 한정함)

〈기타 하천 등〉

1: 결궤나 월수 · 일수가 발생한 경우

2: A강 B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제방 높이 (또는 배후 지반 높이)인 ○○m에 도달할 우려가 높은 경우 (월수, 일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정상적인 누수 · 침식의 진행이나 균열 · 미끄러움의 발생 등에 의해 결궤의 우려가 높아진 경우

4: 통문, 수문 등 시설의 기능 지장이 발견되었을 경우(발령 대상 구역을 한정함)

[피난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발령기준 例(土砂재해, 고조(高潮), 해일)]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토사 재해〉

1: 호우(大雨)경보(토사 재해)가 발표되고, 동시에 토사 재해 정보[6]에서 「실제 상황 또는 예상에 있어 호우(大雨)경보의 토양강우량지수(土壤雨量指数)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몇 시간 후, 피난경로 등 사전통행규제 등의 기준치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호우(大雨)주의보가 발표되고, 그 주의보에서 야간~다음날 새벽 사이에 호우경보(토사 재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된 경우

주1: 상기 1~3 이외에 대해서도, 강우량과 토사 재해 발생의 관계에 관한 지견 등에 근거하여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촌 내의 강우량 관측지점이나 토사 재해 위험장소 등에서 이미 누적(累加)강우량이 일정량을 넘어, 그 시점 이후에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판단 기준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주2: 토사 재해에 관한 정보는 최대 2~3시간 이후까지의 예측이다. 때문에 상기의 판단기준 예 1의 적용에 있어서, 배려대상자의 피난행동 완료까지 보다 긴 유예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 재해에 관한 정보의 바둑판형 판정이 나오기 이전에, 호우경보(토사 재해)의 발표에 근거하여 피난준비 · 고령자 등 피난개시 발령을 검토할 수 있다.

〈고조(高潮)〉

1: 고조주의보 발표에서 경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를 언급한 경우

2: 고조주의보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정보에서 태풍 범위가 시정촌에 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나 또는 태풍이 시정촌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이세만(伊勢湾: 혼슈 중앙부 태평양안의 큰 만) 태풍」급의 태풍이 접근해, 상륙 24시간 전에 특별경보의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부현(府県)의 기상정보나 기상청 기자회견 등에 의해 주지된 경우

6) 이하 토사재해정보란 Real-time landslide risk map으로 지도상 5km사각 구역마다 위험정도를 5단계로 표시하는 정보.

〈〈피난권고〉〉

〈토사 재해〉

1: 토사 재해 경계정보가 발표된 경우
2: 토사 재해에 관한 정보에서「예상에 의하면 토사 재해 경계정보 기준에 도달」한 경우
3: 큰비경보(토사 재해)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적 단시간 큰비정보가 발표될 경우
4: 토사 재해의 전조현상(용수(湧き水: 솟아나는 물) · 지하수의 탁함, 시냇물의 수량 변화 등)이 발견된 경우

주: 상기 1~4 외에도, 강우량과 토사 재해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지견 등에 근거해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촌 내 강우량 관측지점이나 토사 재해 위험장소 등에서 이미 누적(累加) 강우량이 일정량을 넘어, 그 시점 이후에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판단 기준으로서 설정할 수 있다.

〈고조(高潮)〉

1: 고조경보 또는 고조특별정보가 발표된 경우
2: 수위 주지(周知)해안에서 고조범람 위험정보가 발표된 경우
3: 고조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해당 주의보에서 경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가 언급되고, 동시에 폭풍경보 혹은 폭풍특보가 발표된 경우
4: 고조주의보가 발표되었고, 그 주의보에서 야간~다음날 새벽 사이에 경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를 언급한 경우

주: 폭풍경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보급의 시간대(특히 폭풍의 불기 시작하는 시간대)에도 유의하여, 폭풍으로 피난이 불가능해지기 이전에 피난권고를 발령할 필요가 있다.

〈〈피난지시(긴급)〉〉

〈토사 재해〉

1: 토사 재해 경 정보가 발표되고, 동시에 토사 재해에 관한 메시 정보에서「실제 상황으로 토사 재해 경계정보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토사 재해 경계정보가 발표되고 있으며, 더불어 기록적인 단시간 큰비정보가 발표된 경우
3: 토사 재해가 발생한 경우
4: 산울림, 유목(流木)의 유출 발생이 확인된 경우

5: 피난권고 등에 의한 퇴거 피난이 충분하지 않아, 재차 퇴거 피난을 거주자 등에게 재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조(高潮)〉

1: 해안제방 등이 붕괴된 경우
2: 수문, 둑문 등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
3: 비정상적인 월파(越波: 물결이 제방 따위를 넘어서 흐르는 일), 월류(越流: 물 따위가 넘쳐서 흐름)가 발생한 경우
4: 조위(潮位)가 「위험조위※」를 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추측되는 경우

※ 위험조위: 그 조위를 넘으면 해안제방 등을 넘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각 해안별 제방 등의 높이, 과거 고조 시 조위 등에 유의하여 피난권고 등의 대상구역별로 설정하는 조위

〈해일(津波)〉

1: 대(大) 쓰나미 경보, 쓰나미 경보, 쓰나미 주의보의 발표
2: 정전, 통신 단절 등에 의해 쓰나미 경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한 흔들림을 느꼈을 경우, 또는 흔들림은 약하더라도 약 1분 이상의 긴 흔들림을 느꼈을 경우

붙임 4 일본 피난권고 전달문 등 개정안(대사관 수정안 포함)

1 일본 총무성이 검토하는 가이드라인 “전달문” 개정안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	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	대피준비・고령자등 대피개시
避難勧告	대피권고	대피권고
避難指示(緊急)	대피지시	대피지시(긴급)
避難勧告等	대피권고등	대피권고 등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준비・고령자 등 대피개시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시입니다.
○○地区に○○川に関する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강에관한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강에 관한 대피준비・고령자 등 대피개시를 발령하였습니다.
○○川が氾濫するおそれのある水位に近づいています。	○○강이범람할우려가있는수위까지차고있습니다.	○○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수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次に該当する方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お年寄りの方、体の不自由な方、小さな子供がいらっしゃる方など、避難に時間のかかる方と、その避難を支援する方について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川沿いにお住まいの方(急激に水位が上昇する等、早めの避難が必要となる地区がある場合に言及)について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다음에해당하는분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고령자,몸이불편한분,어린아이가있는분등대피에시간이걸리는분과그대피를지원하는분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강가에사시는분(급격히수위가상승하는등신속한대피가필요한지역이있는경우에언급)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고령자, 몸이 불편한 분, 어린아이가 있는 분등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분과 그 대피를 지원하는 분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강가에 사시 는분(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는 등 미리 대피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경우에 언급)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それ以外の方については、避難の準備を整え、気象情報に注意して、危険だと思ったら早め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그이외의분들은대피준비를한후기상정보에주의하면서,위험하다고판단되면신속히대피해주십시오.	그 이외의 분들은 대피준비를 한 후 기상정보에 주의하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대피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困難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勧告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권고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권고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시입니다.
○○地区に○○川に関する避難勧告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강에관한대피권고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강에 관한 대피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川が氾濫するおそれのある水位に到達しました。	○○강이범람할우려가있는수위에도달하였습니다.	○○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수위에 도달하였습니다.
速やかに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신속히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빠르게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危険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か、屋内の高いところ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위험한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거나실내의높은곳으로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의 높은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指示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지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지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시입니다.
○○地区に○○川に関する避難指示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강에관한대피지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강에 관한 대피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川の水位が堤防を越えるおそれがあります。	○○강의수위가제방을넘을우려가있습니다.	○○강의 수위가 제방을 곧 넘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未だ避難していない方は、緊急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아직대피하지않으신분은긴급하게대피해주십시오.	아직 대피하지 않으신 분은 매우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危険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か、屋内の高いところ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위험한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거나실내의높은곳으로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의 높은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地区で堤防から水があふれだしました。現在、浸水により○○道は通行できない状況です。○○地区を避難中の方は大至急、近くの安全な場所に緊急に避難するか、屋内の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지구에서물이제방을넘기시작했습니다.현재침수로인해○○도로는통행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지구에서대피중인분은시급히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거나실내의안전한장소로대피해주십시오.	○○지구에서 물이 제방을 넘기시작했습니다. 현재 침수로 인해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대피중인 분은 시급히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매우 빠르게 대피하거나 실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준비・고령자 등 대피 개시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地区に土砂災害に関する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산사태에관한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산사태에 관한 대피준비・고령자등 대피개시를 발령하였습니다.
土砂災害の危険性が高ま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	산사태의위험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次に該当する方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お年寄りの方、体の不自由な方、小さな子供がいらっしゃる方など、避難に時間のかかる方と、その避難を支援する方 ・崖の付近や沢沿いにお住まいの方（早めの避難が必要となる地区がある場合に言及）について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다음에해당하는분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고령자,몸이불편한분,어린아이가있는분등대피에시간이걸리는분과그대피를지원하는분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절벽부근이나골짜기근처에사시는분(신속한대피가필요한지역이있는경우에는언급)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고령자, 몸이 불편한 분, 어린아이가 있는 분등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분과 그 대피를 지원하는 분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절벽부근이나 골짜기근처에 사시는 분(미리 대피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경우에 언급)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それ以外の方については、避難の準備を整え、気象情報に注意して、危険だと思ったら早め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그이외의분들은대피준비를한후기상정보에주의하면서,위험하다고판단되면신속히대피해주십시오.	그 이외의 분들은 대피준비를 한 후 기상정보에 주의하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대피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困難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勧告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권고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권고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地区に土砂災害に関する避難勧告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산사태에관한대피권고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산사태에 관한 대피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土砂災害の危険性が高まっています。	산사태의위험성이높습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速やかに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신속히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빠르게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危険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か、屋内の高いところ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위험한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하거나실내의높은곳으로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의 높은곳으로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指示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지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지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地区に土砂災害に関する避難指示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산사태에관한대피지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산사태에 관한 대피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地区で土砂災害の発生（または、山鳴り、流木の流出）が確認されました。	○○지구에서산사태의발생(또는산울림,유목의유출)이확인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산사태의 발생(또는 산울림, 유목의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土砂災害の危険性が極めて高まっています。	산사태의위험성이매우높습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未だ避難していない方は、緊急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아직대피하지않으신분은긴급하게대피해주십시오.	아직 대피하지 않으신 분은 매우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危険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緊急に避難するか、屋内の山から離れた高いところに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위험한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긴급히대피하거나실내에서산으로부터떨어진높은곳으로긴급히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매우 빠르게 대피하거나 실내에서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매우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준비・고령자 등 대피개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地区に高潮に関する避難準備・高齢者等避難開始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폭풍해일에관한대피준비・고령자등대피개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폭풍해일에 관한 대피준비・고령자등 대피개시를 발령하였습니다.
高潮の危険性が高ま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	폭풍해일의위험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	폭풍해일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次に該当する方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お年寄りの方、体の不自由な方、小さな子供がいらっしゃる方など、避難に時間のかかる方と、その避難を支援する方 ・海岸沿いにお住まいの方（早めの避難が必要となる場合に言及）については、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다음에해당하는분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고령자,몸이불편한분,어린아이가있는분등대피에시간이걸리는분과그대피를지원하는분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해안가까이에사시는분(신속한대피가필요한지역이있는경우에언급)은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고령자, 몸이 불편한분, 어린아이가 있는 분 등 대피에 시간이 걸리는 분과 그 대피를 지원하는 분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해안 가까이에 사시는분(미리대피가 필요한 경우에 언급)은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それ以外の方については、避難の準備を整え、気象情報に注意して、危険だと思ったら早め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그이외의분들은대피준비를한후기상정보에주의하면서,위험하다고판단되면신속히대피해주십시오.	그 이외의 분들은 대피준비를 한 후 기상정보에 주의하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미리대피해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避難場所への避難が困難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이동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근처의안전한장소로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勧告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권고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권고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시입니다.
○○地区に高潮に関する避難勧告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폭풍해일에관한대피권고를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폭풍해일에 관한 대피 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高潮の危険性が高まっています。	폭풍해일의위험성이높습니다.	폭풍해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速やかに避難を開始してください。	신속히대피를시작해주십시오.	빠르게 대피를 시작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危険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避難するか、屋内の高いところ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의 높은곳으로 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의 높은곳으로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指示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지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지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시입니다.
○○地区に高潮に関する避難指示を発令しました。	○○지구에 폭풍해일에 관한 대피 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지구에 폭풍해일에 관한 대피 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高潮の危険性が極めて高まっています。	폭풍해일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풍해일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있습니다.
未だ避難していない方は、緊急に避難をしてください。	아직 대피하지 않으신분은 긴급하게 대피해주십시오.	아직 대피하지 않으신분은 매우빠르게 대피해주세요.
避難場所への避難が危険な場合は、近くの安全な場所に緊急に避難するか、屋内の高いところに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긴급히 대피하거나 실내의높은 곳으로 긴급히 대피해주십시오.	대피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매우 빠르게 대피하거나 실내의 높은 곳으로 긴급히 대피해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일본 총무성 작성 원본)	한국어(대사관 수정 의견)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指示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지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지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시입니다.
大津波警報（または、津波警報）が発表されたため、○○地域に避難指示を発令しました。	대형지진해일경보(또는지진해일경보)가발표되었으므로○○지역에대피지시를발령하였습니다.	대형 지진해일경보(또는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으므로 ○○지역에 대피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ただちに海岸や河川から離れ、できるだけ高い場所に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즉시해안이나하천에서멀리떨어져서가능한한높은곳으로긴급히대피해주십시오.	즉시 해안이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서 최대한 높은 곳으로 매우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指示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지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지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強い揺れの地震がありました。	강하게흔들리는지진이발생했습니다.	강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津波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地域に避難指示を発令しました。	지진해일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지역에대피지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에 대피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ただちに海岸や河川から離れ、できるだけ高い場所に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즉시해안이나하천에서멀리떨어져서가능한한높은곳으로긴급히대피해주십시오.	즉시 해안이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서 최대한 높은 곳으로 매우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緊急放送、緊急放送、避難指示発令。	긴급방송,긴급방송,대피지시발령.	긴급방송, 긴급방송, 대피지시 발령.
こちらは、○○市です。	여기는○○시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たため、○○地域に避難指示を発令しました。	지진해일주의보가발표되었으므로○○지역에대피지시를발령하였습니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으므로 ○○지역에 대피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海の中や海岸付近は危険です。ただちに海岸から離れて高い場所に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바다나해안부근은위험합니다.즉시해안에서멀리떨어져서높은곳으로긴급히대피해주십시오.	바다속이나 해안부근은 위험합니다. 즉시 해안에서 멀리떨어져서 높은 곳으로 매우 빠르게 대피해주세요.

2 일본 기상청이 검토하는 관련 용어 개정안

일어(원본)	한국어(기상청번역본)	한국어(대사관 수정안)
大雨特別警報（土砂災害）	호우특보(토사재해)	호우특보(토사재해)
大雨特別警報（浸水害）	호우특보(침수재해)	호우특보(침수재해)
大雨注意報	호우 주의보	호우 주의보
洪水警報	홍수 경보	홍수 경보
大雪特別警報	대설특보	대설특보
暴風雪特別警報	눈폭풍특보	눈폭풍특보
暴風特別警報	폭풍특보	폭풍특보
風雪注意報	풍설주의보	풍설주의보
強風注意報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
波浪特別警報	풍랑특보	풍랑특보
波浪警報	파랑경보	풍랑경보
波浪注意報	풍랑주의보	풍랑주의보
高潮特別警報	고조특보	폭풍해일 특보
雷注意報	천둥주의보	천둥번개 주의보
濃霧注意報	짙은안개주의보	짙은안개 주의보
乾燥注意報	건조주의보	건조 주의보
なだれ注意報	눈사태주의보	눈사태 주의보
着氷注意報	착빙주의보	착빙 주의보
着雪注意報	착설주의보	착설 주의보
融雪注意報	눈이녹는주의보.	융설 주의보
霜注意報	서리주의보	서리 주의보
低温注意報	저온주의보	저온 주의보
発表	발표	발표
継続	지속	지속
解除	해제	해제
警報の危険度分布	경보의위험도분포	경보의 위험도 분포
台風情報	태풍정보	태풍정보
指定河川洪水予報	지정하천홍수예보	지정하천 홍수예보

일어(원본)	한국어(기상청번역본)	한국어(대사관 수정안)
土砂災害警戒情報	토사재해경계정보	토사재해 경계정보
竜巻注意情報	회오리바함주의정보	회오리 바람 주의 정보
高温注意情報	고온주의정보	고온주의정보
○○に特別警報を発表しています。	○○특별경보를발표하고있습니다.	○○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지금까지경험한적이없을만큼비가많이내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큰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重大な危険が差し迫った異常事態です。	중대한위험이임박한이상사태입니다.	중대한 위험이 임박한 비상사태입니다.
危険な場所には近づかないでください。	위험한곳은피해주세요.	위험한 곳은 피해주세요.
地元市町村からすでに発令されている避難情報に直ちに従う等、適切な行動をとってください。	각지역으로부터발령되고있는피난정보에따라적절한행동을취하세요.	현지 시정촌으로부터 이미 발령된 대피정보에 즉시 따르는 등 적절한 행동을 해 주세요.
今後の情報や周囲の状況、雨の降り方に注意してください。	향후정보와주위의상황,비의특징에주의하세요	앞으로의 정보, 주위의 상황 및 비의상태에 주의해 주세요
これらの地域では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大雪となっており、今後さらに大雪が続く見込みです。	이지역에서는지금까지경험한것적이없는폭설이되여있고앞으로도더욱강한폭설이이어질전망입니다.	이지역들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적이 없는 폭설입니다.앞으로도 더욱 강한폭설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広範囲で長期間にわたる交通障害（道路、鉄道、飛行機）や車両の立ち往生、集落の孤立などに、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광범위로장기간에걸쳐교통장애(도로,철도,비행기)및차량의불통,취락의고립등에최대급의경계가필요합니다.	광범위로 장기간에 걸쳐 교통장애(도로,철도,비행기) 및 교통마비, 마을의 고립 등에 최대급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大雪による交通障害に警戒してください。	폭설로인한교통장애에경계하세요	폭설로 인한 교통장애에 경계해 주세요
○○に特別警報を発表しています。暴風に最大級の警戒をしてください。	○○에특보를발표하고있습니다. 폭풍에최대급의경계를하세요.	○○에 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폭풍에 최대급의 경계를 해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기상청번역본)	한국어(대사관 수정안)
これらの地域では、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波浪、高潮、大雨となるおそれがあります。	이지역에서는지금까지경험하지못했던폭풍,파랑,고조,폭우가내릴우려가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적이 없는 폭풍, 풍랑, 폭풍해일, 큰비가내릴우려가 있습니다
直ちに、地元市町村の避難情報に従い、猛烈な風が吹く前に避難を完了する等、身を守るため、適切な行動をとってください。	당장현지시읍면의피난정보에따르는맹렬한바람이불기이전에대피를완료하는등몸을지키기위한적절한행동을취하세요.	즉시 현지 시정촌의 대피 정보에 따라 맹렬한 바람이 불기전에 대피를 완료하는 등 몸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해주세요.
不要・不急な外出は控えてください。	불필요·급하지않은외출은삼가세요.	필요하지도않고 급하지도 않은 외출은 삼가 주세요.
周囲の状況を十分に確認して行動してください。	주위의상황을충분히확인하고행동하세요.	주위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행동해 주세요.
避難を完了した後も油断しないでください。	대피를완료한후에도방심하지마세요.	대피를 완료한 후에도 방심하지 말아 주세요.
最新の情報を利用してください。	최신정보를이용하세요.	최신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XXに最大級の警戒をしてください。	XX에최대급의경계를하세요.	XX에 최대급의 경계를 해주세요.
XXに警戒してください。	XX에경계하세요.	XX에 경계해 주세요.
XXに注意してください。	XX에주의하세요.	XX에 주의해 주세요.
火山名 ○○山 噴火警報（居住地域） ＜○○山に噴火警報（噴火警戒レベル５、避難）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주거지역) <○○산에폭발경보(분화경계수준5피난)을발표>	화산이름○○산화산 폭발경보(주거지역) <○○산에화산폭발경보(화산폭발 경계수준 5대피)를 발표>
火山名 ○○山 噴火警報（居住地域） ＜○○山に噴火警報（噴火警戒レベル４、避難準備）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주거지역) <○○산에폭발경보(분화경계수준4,대피준비)을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 경보(주거지역) <○○산에 화산폭발경보 (화산폭발 경계수준4, 대피준비)을 발표>
火山名 ○○山 噴火警報（火口周辺） ＜○○山に火口周辺警報（噴火警戒レベル３、入山規制）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화구주변) <○○산에화구주변경보(분화경계수준3,입산규제)을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경보(화구주변) <○○산에 화구주변경보 (화산폭발 경계수준3, 입산규제) 을발표>

일어(원본)	한국어(기상청번역본)	한국어(대사관 수정안)
火山名　○○山 噴火警報（火口周辺） ＜○○山に火口周辺警報（噴火警戒レベル２、火口周辺規制）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화구주변) <○○산에화구주변경보(분화경계수준2,화구주변규제)을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경보(화구주변) <○○산에 화구주변경보(화산폭발경계수준2,화구주변규제)을발표>
火山名　○○山 噴火予報：警報解除 ＜○○山に噴火予報（噴火警戒レベル１、活火山であることに留意）：警報解除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예보:경보해제 <○○산에폭발예보(분화경계수준1,활화산임에유의):경보해제를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예보:경보해제 <○○산에 화산폭발예보(화산폭발경계수준1,활화산임에유의):경보해제를발표>
火山名　○○山 噴火警報（居住地域） ＜○○山に噴火警報（居住地域厳重警戒）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주거지역) <○○산에폭발경보(주거지역엄중경계)을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경보(주거지역) <○○산에 화산폭발경보(주거지역엄중경계)을발표>
火山名　○○山 噴火警報（火口周辺） ＜○○山に火口周辺警報（入山危険）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화구주변) <○○산에화구주변경보(입산해이)를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경보(화구주변) <○○산에 화구주변 경보(입산해이)를발표>
火山名　○○山 噴火警報（火口周辺） ＜○○山に火口周辺警報（火口周辺危険）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경보(화구주변) <○○산에화구주변경보(화구주변해이)를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경보(화구주변)<○○산에 화구주변경보(화구주변해이)를발표>
火山名　○○山 噴火予報：警報解除 ＜○○山に噴火予報（活火山であることに留意）：警報解除を発表＞	화산이름○○산분화예보:경보해제 <○○산에폭발예보(활화산임에유의):경보해제를발표>	화산이름○○산 화산폭발예보:경보해제<○○산에 화산폭발예보(활화산임에유의):경보해제를발표>
火山名　○○山　噴火速報 ＜○○山で噴火が発生＞ 阿蘇山で、平成２８年１０月８日０１時４６分頃、噴火が発生しました。	화산이름○○산분화속보 <○○산에서폭발이발생> 아소산으로,헤세이28년10월8일01시46분경폭발이발생했습니다.	화산이름○○산 화산폭발속보 <○○산에서 화산폭발이발생> 아소산에서 2016년 10월8일 01시46분 경 화산폭발이 발생했습니다.
火山の周辺にいる人は、ただちに火山からできるだけ遠ざかり、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화산주변에있는사람은바로화산에서최대한멀어졌고안전한장소에대피하십시오.	화산주변에 있는 사람은 즉시 화산에서 최대한 멀어져서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기상청번역본)	한국어(대사관 수정안)
○○山で噴火が切迫しています。	○○산에서폭발이촉박합니다.	○○산이 곧 폭발합니다.
丈夫な建物などに避難してください。	튼튼한건물등에대피하십시오.	튼튼한 건물 등으로 대피해 주세요.
ヘルメットやリュックサックなどで身を守って下さい。	헬멧,배낭등으로몸을지키세요.	헬멧, 배낭 등으로 몸을 지켜 주세요.
マスクやハンカチで口を押さえてください。	마스크나손수건으로입을막아주세요.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주세요.
沢沿いからできるだけ離れて、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ください。	사와변에서되도록멀리떨어져서안전한장소에대피하십시오.	골짜기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주세요.
火口周辺や窪んだ場所からただちに離れてください。	화구주변과파인곳에서당장떠나세요.	화구주변과 파인 곳에서 즉시 떠나 주세요.
危険ですので絶対に近づかないでください。	위험하므로절대다가오지마세요.	위험하므로 절대로 다가오지 말아 주세요.
噴火に伴う空振によって窓ガラスが割れるおそれがあります。窓ガラスから離れてください。	분화에따른공간파에의해서유리창이깨질우려가있습니다.유리창에서벗어나세요.	화산폭발에 따른 공간파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주세요.
この場所は危険です。自治体（誘導員）の指示に従ってください。	이곳은위험합니다.자치단체(안내원)의지시에따르세요.	이곳은 위험합니다. 자치단체(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山は入山規制中です。立ち入らないでください。	○○산은입산규제중입니다.들어가지말아주세요.	○○산은 입산규제 중입니다. 들어 가지 말아 주세요.
○○火口周辺は立入規制中です。立ち入らないでください。	○○화구주변은출입규제중입니다.들어가지말아주세요.	○○화구 주변은 출입규제 중입니다. 들어가지 말아 주세요.
○○山は活火山です。万が一の噴火に備えてヘルメットを持参してください。	○○산은활화산입니다.만일폭발에대비하고헬멧을가져오시기바랍니다.	○○산은 활화산입니다. 만일의 화산폭발에 대비해서 헬멧을 가져와 주세요.
火口付近では火山ガスに注意してください。	화구부근에서는화산가스에주의하세요.	화구 부근에서는 화산가스에 주의해 주세요.
気象台や市町村が発表する情報に注意してください。	기상대와시읍면이발표하는정보에주의하세요.	기상대와 시정촌이 발표하는 정보에 주의해 주세요.

일어(원본)	한국어(기상청번역본)	한국어(대사관 수정안)
札幌市	삿포로시	삿포로시
中央区 ※札幌市中央区	주오구	쥬오구
当別町	도베쓰초	도베쓰초
新篠津村	신시노쓰무라	신시노쓰무라
中央区 ※東京都中央区	주오구	쥬오구
北海道	홋카이도	홋카이도
青森県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
東京都	도쿄도	도쿄도
京都府	쿄토부	쿄토부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서기관 **우 희 창**

4 우즈베키스탄 행정개혁 추진현황

우즈베키스탄 행정개혁 추진현황

1 국가공무원법 제정 배경 및 협력현황

○ 우즈벡 정부는 기존 과거 소련식 사회주의 전통방식에 따른 행정시스템을 지양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을 주도할 목적으로 국가 공공행정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국가발전전략에도 공무원인사시스템 구축 추진이 포함되어 있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공무원법 제정, 독립 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및 국가공무원 교육 훈련 등 인사행정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2017.11.23. 양국 소관부서인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 채용, 보수, 연금,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 인사행정 분야 혁신, 인적자원관리 정책 등 인사 및 행정개혁 분야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각서(MOC)를 체결한바 있음.

– 작년 6월 한국 인사혁신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인사분야 행정개혁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실행력 있고 구체성 있는 양국 간 인사협력 방안인 협력플랜을 마련하여 협의하였음

○ 2018. 6월 한국 인사혁신 분야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는 협력각서(MOC)의 후속조치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법 제정안을 자문하는 등 인사행정개혁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음.

– 향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법 제정 추진현황 모니터링과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인사시스템을 우즈벡에 정착시킴으로써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동하는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특히, 우즈벡은 국가공무원법 제정 미비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위임전결 규정 등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부재로 우즈벡에 진출한 한국 민간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국가공무원법 제정 추진 지연사유

○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추진을 위해 주재국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제정안을 마련하여(2017)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폐기됨

- 1차 법안 추진 실패 후 2차로 2018년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역시 승인을 얻지 못하고 폐기됨으로써 현재에 이르렀음

○ 주재국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를 통한 두 번에 걸친 법안 제정 시도의 불발은 첫째, 동 법안 내용을 공무원 겸직금지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공무원 급여 현실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주재국 재정 소관부처의 이견과 아울러 주재국 국민들의 공무원 급여인상에 대한 수용 여건 부족으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동 법안 내용에 공무원 재산 신고 규정이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의 재산,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즉시 수용할 주재국 내 공무원 조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3 국회 상정 법안 주요내용

○ 2017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추진한 우즈벡 공무원법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기본개념, 공직 관련 법, 적용범위 및 공무수행 원칙 등의 일반조항
- 주재국 내각의 권한, 공직사무 관련 공인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기능, 국가기관의 권리와 의무, 인사 서비스, 공직의 범주, 공무원 직위 그룹, 직급, 공무원 등록, 자격요건 및 공공서비스 자금 조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서비스의 기조사항
- 공무원의 의무, 권리, 윤리, 이해관계의 충돌, 재산 및 소득과 지출 신고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
- 기타 공직 진출, 공무수행 및 종료, 공무원 훈련, 재훈련, 심화훈련, 인적자원의 형성,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법적 보호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기관 **전 한 성**

5 싱가포르 디지털정부 추진전략

싱가포르 디지털정부 추진전략

〈요 약〉

□ 배경

○ 최근 싱가폴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정부 추진전략을 마련('18.6월) 하고, 국민에게 공개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2018년 UN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전지수 분야에서 7위를 차지하는 등 전자정부 경쟁력을 보유

□ 주요 내용(2030년을 시계로 6대 목표, 6대 전략 제시)

〈〈2대 원칙〉〉

○ 핵심분야 디지털화(Digital to the Core).
- 시민/기업/정부관련 서비스 혁신, 기술인프라 혁신, 업무 프로세스 재설정을 위해서 데이터, 컴퓨팅 자원 등을 적극 활용

○ 진정성있는 서비스 제공(Serves with Heart)
- 가능한 모든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추진

〈〈6대 목표〉〉

○ 이용편의성 향상(Easy-to-use)
-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디지털 정부서비스 개발

○ 끊김없는 서비스(Seamless)
- 종이가 필요없는 디지털 거래를 강화

○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Secure and Reliable)
  – 시민/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위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 수요자중심 서비스(Relevant)
  – 시민과 기업 수요 중심의 디지털 정부서비스 개발

○ 업무환경 디지털화 촉진(Digitally enabled workplaces)
  –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간 협업을 촉진

○ 디지털 역량 강화(Digitally Confident workforce)
  – 교육훈련을 통해 기본 디지털 지식을 갖추고, 업무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접목을 활성화

〈〈6개 추진전략〉〉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 서비스 흐름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통합

○ 디지털 정부 정책/운용/기술간 통합 강화
  –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정책/운용/기술간 업무 연계성 강화

○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구축
  – 정부부처간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표준 정립

○ IT시스템 운영의 신뢰성/복원력 강화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

○ 시민/기업과 협업 촉진 및 신기술 접목 활성화

1 수립배경

○ 싱가포르 정부는 80년대 전산화 사업을 시작으로 30여년동안 정보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는 국제적 수준의 정보화역량을 확보

– 시민들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일상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상시 적용하고 있음

○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한 단계 높은 디지털화를 추진

– 고령화에 따른 이용가능 노동력의 감소, 수준높은 정부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정부의 혁신적 개선 노력이 요청

○ 금번 '디지털 정부 청사진(Digital Government Blueprint)'는 이전의 '전자정부 마스터프랜'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

– 기술 변화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마일스톤이 포함

2 비전: 핵심 역량의 디지털화, 진정성있는 서비스 제공

○ (핵심 역량의 디지털화)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전달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 컴퓨팅 기술 등을 최대한 이용

○ (진정성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개인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

3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요구에 대응이 가능

○ 이용하기 쉬운 편리한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이용가능한 끊김없은 서비스 제공, 원스탑 서비스 제공, 정보보호 강화 등 추진

4 공무원 경쟁력 강화

○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융합되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디지털화를 통한 고품질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디지털을 통한 부처간 협업 촉진

○ 사무지원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이용 관련교육 강화

5 디지털 정부 구축

1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통합

○ (기업) 기업 지원 신청절차와 면허 발부절차 통합을 추진 중
- 기업 지원 신청절차는 '정부 기업지원 포털(Business Grants Portal)'을 통해, 면허 발부절차는 '면허 포털(Licenceone Portal)'을 통해 각각 제공
- 향후 새로운 통합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부와의 거래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

○ (개인) 생애주기별 개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

2 정책/조직운영/기술간 통합 강화

○ '디지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업무절차를 재설계한 후 주기적 검토 추진

○ AI, IoT, 블록체인 등 IT 유망 신기술을 정책개발과 정부운영에 적극 활용
- AI기술은 정형적인 업무의 자동화, 개인화되고 예측가능한 서비스의 제공, 교통/보안과 같은 상황 예측 등의 분야에 적용
- AI 리스크 관리를 위해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
- IoT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더욱 지능적으로 만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
- 아직 덜 성숙된 블록체인기술은 소규모 실험과제부터 실행할 예정

○ 디지털화 계획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디지털 전략 담당관(Chief Digital Strategy Officers)'을 임명
- 중간관리자층과 실무자층에 대해서는 디지털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

3 공용 플랫폼 구축

○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 정부 공용 플랫폼(SGTS: Singapore Government Technology Stack)'을 구축 중
-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
  * '마이인포(MyInfo Initiatives)'는 동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된 첫 번째 사례, 통상 1년 걸리던 기간을 단축하여 4개월만에 시범시스템을 개발

○ 정부간 데이터 공용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관련 입법(Public Sector Governance Act)이 마련
- 데이터 표준을 정하고, 기관간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아키텍처를 개발할 계획
- 또한, 이용률이 높은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해 나갈 계획

4 신뢰받는 시스템 운영

○ 사이버 위협 증대에 따라, 정보시스템 보안과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감시 및 탐색 역량 제고, 핵심 시스템의 복원력 향상, 핵심역량 제고 등 '사이버보안 전략계획' 수립 추진

○ 온라인교육을 초임 공직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관련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내 사이버보안 인식을 제고

5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 정부는 정책역량과 기술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 양성 추진
- IT영재를 발굴, 향후 기술관료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장학금제도(Smart Nation Scholarship)가 시행 중

○ 2023년까지 2만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과학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 ICT 역량 제고 추진

○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공직사회 문화도 개선
-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간 협업을 통해 IT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획득

○ R&D분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수요에 부합한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수요와 공급간 연계를 강화

6 민간부문과의 협업 강화

○ 정부서비스에 대해 개인, 기업으로 부터 주기적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 추진
- 다양한 사회 계층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중심 서비스를 개발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디지털서비스 표준 및 개발 원칙을 정립하여 공표할 계획

6 성과 지표(2030년까지)

1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Stakeholder Satisfaction)

○ 시민 만족도 : 매우 만족 응답률 75~80%

○ 기업 만족도 : 매우 만족 응답률 75~80%

2 디지털서비스 제공(End-to-end digital options)

○ 전자결재 가능율 100%, 디지털 문서결재 가능율 100%

3 디지털 거래(End-to-end digital transactions)

○ 전자거래 가능율 90~95%, 전자결재율 100%

4 디지털 역량(Digital capabilities)

○ 전문디지털역량 교육 수료 공무원 20,000명, 모든 공무원의 기초 디지털역량 교육 수료

5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Transformative digital projects)

○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수 30~50개

6 AI 및 데이터(AI, Data and data analytics)

○ 모든 부처는 최소한 1개업무 이상에 AI를 적용

○ 범정부 데이터분석 프로젝트 연간 10개 수행 및 부처별 연간 2개 데이터분석 프로젝트 수행

○ 주요 데이터 전자화율 90~100%

○ 기관간 데이터 공유에 소요되는 시간 10일 이하

7 시사점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많음
- 신기술 측면에서는 AI, 빅데이터, IoT 등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이를 접목한 신규 정부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강조
-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
- 정부 내부 역량측면에서는 디지털 정부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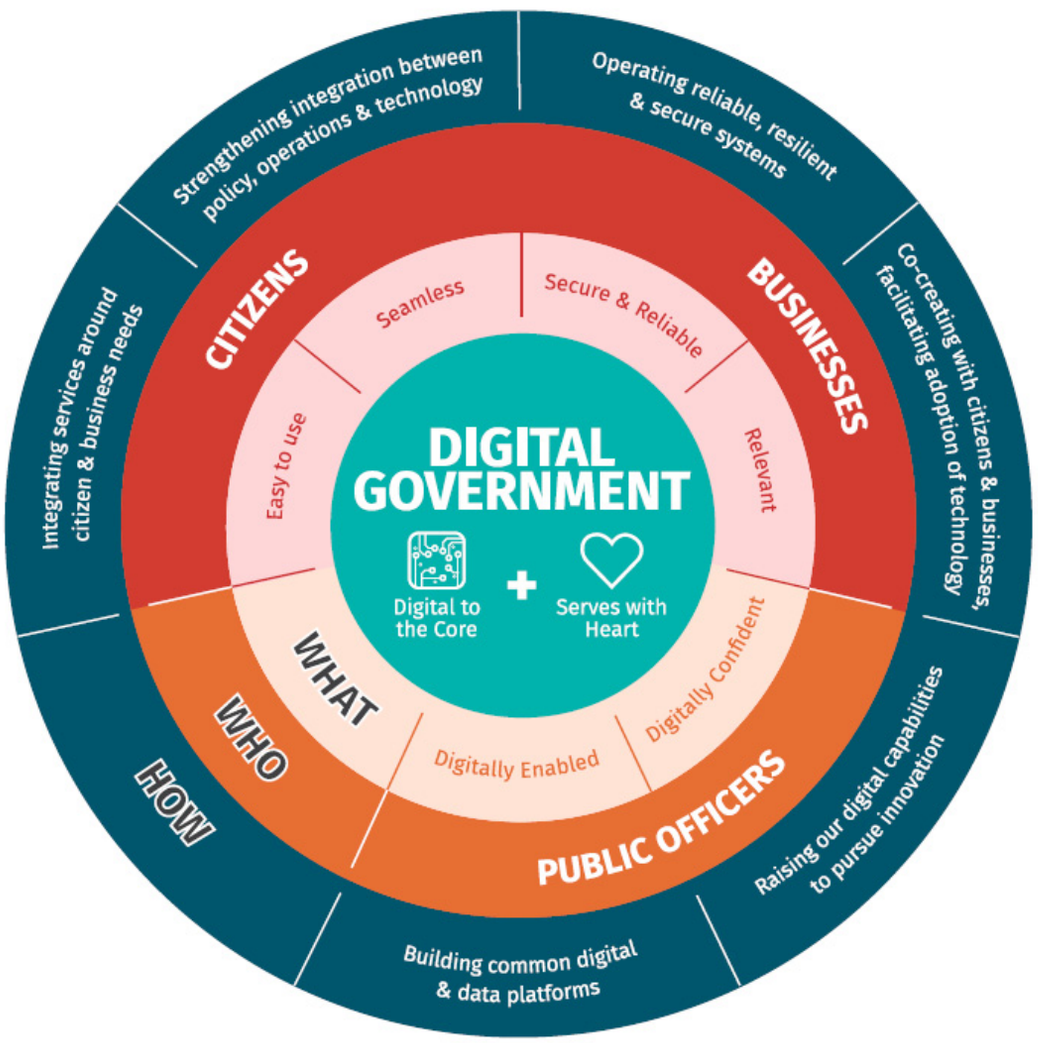
○ 다만, IT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동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성과 계량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필요
- AI 등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정부 업무로 정형적인 업무분야의 자동화, 교통 상황 예측,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분야 등을 거론
- 서비스 만족도, 디지털 환경, 디지털 역량 등 6대 분야 총 14개 성과 달성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

○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정부의 전환을 통해 범국가적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회를 포착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국가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 싱가포르 디지털 정부 청사진 요약

DIGITAL GOVERNMENT BLUEPRINT

2 PRINCIPLES
3 STAKEHOLDERS
6 OUTCOMES
6 STRATEGIES



2018년
국외파견 공무원 정책보고서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행정한류담당관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전　　화 | (02)2100-3371
팩　　스 | (02)2100-3366
www.mois.go.kr